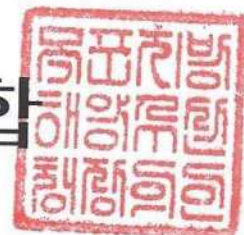


여객선
섬드리비금농협고속페리
운항관리규정
(목포-가산)

비금농업협동조합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 항목장	개정이유 및 내역
1	16. 08 .05	전장	신규
2	17. 07. 19	제2조(용어의 정의)	“정의는”을 “뜻은”으로 정정
3		제8조(안전관리조직)	제③항 :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협조한다” 추가 / 화물, 해무, 공무 담당을 소장으로 변경 / 안전관리조직도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 변경
4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제①항 : “섬드리비금농협고속페리호”에서 “섬드리비금농협고속페리”로 수정 / 항해속력 “14노트”에서 “15노트”로 수정 / “비금”에서 “가산”으로 변경
5		제18조(항해업무)	제⑤항 제1호 : 본선에 맞게(송공항 접안시설 부족) 운항항로 분리 / 항해속력 “14노트”에서 “15노트”로 변경 / 기항지 및 종착지 부분 삭제 / 운항시각 부분 변경 제⑤항 제2호 : 본선에 맞게(송공항 접안시설 부족) 분리 / 거리 부분 수정 제⑤항 제4호 : 비금(수치) 추가 / 거리 부분 수정
6		제19조(입·출항시 업무)	제③항 : “운항관리센터”에서 “목포운항관리센터”로 정정 제⑤항 : “단, 일반카페리선박에 ~첨부하도록 한다” 삭제 제⑧조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7		제20조(통신업무)	제④항 : “채널06”에서 “채널16”으로 수정 제⑤항 : “해양긴급번호 122” 삭제
8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제③항 : 122에서 119로 변경
9		제23조(화물관리)	제①항 : 차량 적재 수 case별로 추가 제③항 제6호 : “다만, 일반카페리선박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 “는 보호띠를 설치하고” 삭제
10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제②항 : “운항관리센터”에서 “목포운항관리센터”로 정정
11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하여 표시하고 일반화물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선수창고 우현)” 추가
12		제29조(비상대응)	제⑤항 제1호 : 상황센터를 상황실로 변경 / 122를 119로 변경 / “섬드리비금농협고속페리호”에서 “섬드리비금농협고속페리”로 수정 / 구조반 및 조사반 소장으로 변경 제⑤항 제5호 :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목포운항관리센터”로 정정 / “해양경비안전서”에서 “목포해양경비안전서”로 정정
13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제⑤항 : 삭제
14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제④항 : “운항관리센터”에서 “목포운항관리센터”로 정정
15		[붙임5](차량적재도)	승인 확인 가능하도록 첨부

16	17. 07. 19	[붙임7](선원법정교육 목록)	리더쉽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등 추가 / 현행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
17		[붙임9](선박계획정비표)	본선 장비 및 여건에 맞게 수정
18		[붙임10](비상부서 배치표)	[붙임12](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의 화재신호와 동일하게 수정
19		[붙임11](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상황센터”를 “상황실”로 변경 / “122”를 “119”로 변경 / “운항관리실”을 “운항관리센터”로 변경 / “갑판장(항해사)”를 “갑판부원(기관부원)”으로 수정
20	18. 03. 31	제8조(안전관리조직)	제②항 제2호 : “비금농협”을 “비금농협 차도선사업소”로 수정 / 제③항 : 여객담당 “대표원”에서 “소장”으로 변경
21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 체제)	제①항 : “비금농협차도선을 이탈하였을때에는” 삭제 / “단기간(10일 미만) 부재시에는 ~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추가
22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제①항 : “61.27X14.00X3.00”에서 “71.65X16.00X3.00X”으로 수정 / 제②항 제1호 : “임시여객 : 15명” 삭제 / 제②항 제2호 : “임시최대승선인원” 추가 / 제②항 제3호 : “(선원은 최소 4명 이상이 승선할 것.)” 추가
23		제18조(항해업무)	제⑤항 제7호 : “목포(북항), 목포항(여객터미널)”에서 “목포(북항, 여객선터미널)”로 수정
24		제20조(통신업무)	제③항 :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양경찰서”로 변경
25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제②항 : “기록관리·유지하여” 삭제
26		제29조(비상대응)	“목포해양경비안전서(상황실)”에서 “목포해양경찰서”로 변경 제⑤항 제 5호 :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서 목포해양경찰서로 변경
27		제35조(유류관리)	제④항 :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양경찰서”로 변경
28		제43조(부족합사항의 시정조치)	제①항 제3호 :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양경찰서”로 변경
29		제45조(규정의 적용)	제①항 : 삭제
30		[붙임2]~[붙임4]	최근 승인 도면으로 변경
31		[붙임6]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비고란에 “2. 위험물선박운송기준~적재할 수 없음” 추가
32		[붙임9]선박계획정비표	(기관부)일별 점검표 추가
33		[붙임11]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서 “관할 해양경찰서”로 변경 / “구명동의”에서 “구명조끼”로 수정
34		[붙임14]선박 문서 보존연한	승무정원증서 “유효기간”에서 “영구”로 변경
35	[붙임15]문서관리대장	“폐기물기록부” 추가	
36	18.5.21	제8조(안전관리조직)	제③항 “(수석)안전관리자 노장섭”에서 “(수석)안전관리자 안희재”로 변경
37	18.5.21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 근무체제)	제①(수석)“~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휴대폰 등)를 유지하여야 한다”에서 업무대행자 및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휴대폰 등)를 유지하여야 한다.

38	18.8.8	제17조 (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1의항로 목포-가산을 목포-도초로 수정
39		제18조(항해업무)	5의1 운항항로의 가란의 항로 목포-가산에서목포-도초로 수정 종착지(중점)을도초(화도)와 운항시각 2:00(00:20)으로 수정
40		제18조(항해업무)	나란의 목포-가산에서 목포-도초로 수정 종착지 도초(화도)와 운항시각 2:00(00:20)으로 수정
41		제18조(항해업무)	2.기점.중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상호간의 거리란의 가.압해(송공)을 도초(화도)34-49.97N,125-56.14E, 거리(마일)은 26(5)로 수정
42		제18조(항해업무)	2.목포(북항)34-48.27N,126-21.87E를 삭제하고 도초(화도)34-49.97N,125-56.14E, 거리(마일)은 26(5)로 수정
43		제18조(항해업무)	3.의마 기타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에서 중앙대교(팔금/압태)삭제하고, 서남문대교(비금/도초) 삽입
44		제18조(항해업무)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장소 가. 출항/입항시 5란에 압해(송공) 삭제하고, 도초(화도) 34-42.97N 125-56.14E로 수정하고, 거리(마일)을 4.9로 수정
45		제20조(통신업무)	4의 항계외에서는 “채널16”에서“ 06”으로 수정
46		[붙임1]	항로도 수정
47		18.8.9	제8조(안전관리조치)
48	제18조(항해업무)		2의가1에 목포-도초를 삽입하고 가,나.송공항 접안시설 부족으로 기항이 불가하여 접안시설 확보시까지 미기항란을 삭제.
49	선박계획 정비표(9-3)		점검일자 삭제
50	18.8.21	제8조 지점(영업소)	2의다에 팔금(장촌)추가.
51		제17조 (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①항의 항해속력 15노트에서 13.5노트로 수정
52		제18조 (항해업무)	⑤항의1에 팔금(장촌) 추가. 항해속력을 13.5노트로 수정 .운항시각을 시간으로 수정. 시간 삽입
53		제18조(항해업무)	⑤항의2에팔금(장촌)34-46.00N,126-07.09E12.2(22.4)로 삽입.
54		제18조(항해업무)	⑤항의2에 거리를 Km로 삽입.
55		제18조(항해업무)	⑤항의4에 팔금(장촌) 34-46.00N,126-07.09E.거리(mile)을 Km로 추가.
56		제18조(항해업무)	⑤항의1에 울도와 달리도 사이 항로는 주간에만 통행한다.를 추가

57	19.04.02	제20조(통신업무)②항표	보고시기:출항직후를 출항후10분이내로 정정
58	19.04.02	제32조(선박의안전점검)	①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않은 지역을 운항관리자 미배치지역으로수정 ②시정조치후 출항하여야한다를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않는 결항사항으로 즉시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별지 제2호를 별지 제1호로 정정
59	19.04.02	제41조(여객선 이력관리)①항 5.	5.해상사고 이력을 해양사고 이력으로 수정
60	19.04.02	(불입8)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표	개정된 서식으로 최신화 요함
61	19.04.02	(불입9)선박계획정비표 (9-6)의 주기관	4 기측운전, 제어시 운전을 추가
62	19.04.02	제32조③항	해운법시행규칙 별지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제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월례점검, 노후선특별점검은 별지 제3호부터 제5호 서식에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임자,로수정
63	18.04.02	선박계획정비표 기관부 분기별 점검표	주기관 3의 주기관 기측운전,제어 시운전 확인으로 수정
64	19.04.02	p4,11,12,13	기항지 변경 팔금(장춘) → 암태(남강)
65	19.04.02	p13 제18조(항해업무) ⑤항 3.마.	2)장애물 (연도교 교각) 중앙대교(암태/팔금도) 추가
66	19.04.02	p20 제23조(화물관리) ①항 1.	1.화물의 → 차량의 로 변경 일반화물적재한도:2톤 추가
67	19.04.02	p35 [불입1] 항로도	항로도 남강 기항지 추가 남강 → 목포 항로 추가
68	19.04.02	p52 [불입9] 선박계획정비표	7.기적,호종 작동 및 비치상태 점검 추가

69		p5 8조 ③	(수석)안전관리책임자 변경
70		p11 제18조(항해업무) ②항	“매시간당 1회 이상 아래사항을~”에서 “매시간당 1회 이상 및 운항 종료 시 아래사항을~”로 수정
71		p1 제2조(용어의정의) 1.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72	19.07.08	p5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④항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73		p7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②항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74		p16 제20조(통신업무)②항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75		p28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①항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76		p21 제23조(화물관리) ①항 차종(수량)	“중형자동차(54대)”에서 “중형자동차(55대) + 소형자동차(2대)”로 변경
77		p26 제29조(비상대응) ⑤항 비상상황 연락기관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해양긴급신고”로 변경
78		p28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항	“①선장은 ...수행한다.”에서 “①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수행한다.”로 내용 추가
79		p29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⑤항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 「붙임13」은 다음과 같다.”에서 “...시설 현황은 「붙임13」과 같다”로 수정
80	19.12.	p40 [붙임5] 차량적재도	MIDDLE PASS CAR ARRANGEMENT 변경
81		p51 [붙임8]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개정
82		p56 [붙임9] 선박계획정비표(9-5) 신호단 ①항	“보강상태확인”에서 “보관상태확인”으로 수정
83		p66 [붙임13]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항해 ③항	“GPS 플로터(ECHO SOUNDER 겸용)”에서 “GPS 플로터”로 수정
84		p66 [붙임13]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통신 ③항	“항해경고자료(NAVTEX)”에서 “NAVTEX”로 수정
85	2020.02.	p4 제3장 제8조(안전관리조직)②2.가.기본사항	이유: 지점 사무실 이전 “목포시 북항로 181번길6-1”에서 “신안군 암태면 중부로 1502-26”으로 변경
86		p5 제3장 제8조(안전관리조직)③ 조직도	이유: (수석)안전관리책임자 변경 “오성민 010-5414-7748”에서 “최재성 010-4634-8814”으로 변경
87	2020.05.	p10제7장 제17조(여객선 정원 및 운항구역)②1.2.	이유: 객실 구조변경에 따른 여객정원 감소 1.최대승선인원: “306명(여객정원300명)”에서 “296명(여객정원290명)”으로 변경 2.임시최대승선인원: “456명(여객정원450명)”에서 “446명(여객정원440명)”으로 변경

88	2020.05.	p12제18조(항해업무) ⑤3.2)	이유: 오타수정 2) 저수심 : “노대도 남단 수심 0.5마일”에서 “노대도 남단 0.5마일”로 변경	
89		p15제19조(입.출항 시업무) ⑤	이유: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 변경 “선장 및 기관장은”에서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 한 자)은”로 변경	
90		p16제19조(입.출항 시업무) ⑥	이유: 문구수정 ⑥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된” 경우로 변경	
91		p23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3.	이유: 위험물 보관장소 명시 “[위험물 보관장소:우현선수 창고]” 문구 추가	
92		p32 제10장 제41조(여객선 이력 장부관리)②	이유: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②선장은 ---- 비치.관리 “ <u>및 법 제11조3 제2항 각호의사항(여객선안전정보)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개</u> ” 문구 추가	
93		p34[붙임 목차]	이유: 명칭 수정 “[붙임3] 인명구조장비”에서 “[붙임3] 인명구조장비 및 비상탈출로”로 변경	
94		p36[붙임2] 일반배치도	이유: 여객실 구조 변경, 도면 변경	
95		p37[붙임3] 인명 구조장비	이유: 명칭 수정 “[붙임3] 인명구조장비”에서 “[붙임3] 인명구조장비 및 비상탈출로”로 변경	
96		p38[붙임4] 화재제어도	이유: 여객정원 변경에 따른 구명조끼 수량변경 및 유아용 구명조끼 추가, 도면 변경	
97		p66 [붙임13]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구명조끼”	이유: 구조변경에 따른 여객정원 감소 및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대인,490+소인,48+유아,12 수량 550”로 변경	
98		p66 [붙임13]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항해 : “VHF” 삭제, 통신에 중복 통신 : “NAVTEX” 삭제, 본선에 장비 없음 구명 : 구명부환 “2”에서 “4”로 변경 소화 : “4. 소화전 11” 항목 추가	
99		2020.10.	P1 제1장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유 : 자구수정 1.“안전운항에” → “여객선 안전운항에”로 변경
100			P2 제1장 제2조 (용어의 정의) 12. 16.<신설>	이유 : 정부대행검사기관의 정의 추가 12.“정부대행기관 ----도면을 말한다” → “정부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또는”선급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인한 차량의 배치 및 적재방법 등이 표시된 도면을 말한다”로 변경 이유 : 정의규정 추가 16.“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101	2020.10.	P3 제1장 제5조	이유 : 자구수정 “제5조(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로 변경
102		P3 제2장 제6조 (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4.	이유 : 자구수정 4.“승선인원 확인 및 정확한 화물 중량 확인” → “승선인원, 차량/화물 집계표 확인 및 정확한 화물 계측 실시”로 변경
103		P4 제3장 제8조 (안전관리조직) ①	이유 : 안전관리 조직 등을 두는 주체추가 및 중복 내용 삭제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 및 관할 구역을 두며” → “회사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 전관리 조직을 두며”로 변경
104		P5 제3장 제8조 (안전관리조직) ③	이유 : 안전관리조직도 변경시 편의를 위해 불임으로 이동 “지도.감독 체제(조직도)는 다음과” → “안전관리조직도는 [불임18]과”로 변경 *안전관리조직도 삭제
105		P5 제4장 제9조 ④	이유 : 자구수정 “즉시” → “지체 없이”로 변경
106		P7 제4장 제11조 (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②	이유 :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명확화, 각주 추가 “장기간 업무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재시에는 동등한 자격 을” →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각주)을”로 변경 (각주:「해운법시행령」 제12조의4와 관련한 별표1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한 자
107		P7 제4장 제12조 (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①	이유 :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적용 4.“여객전담선원에” → “여객안전관리선원에”로 변경 5.“여객명부” →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로 변경
108		P8 제5장 제13조 (선장의 책임과 권한) ④	이유 :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적용 “여객관리는 갑판원,” → “여객관리는 갑판원 또는 여객안전관리선원,”로 변경
109		P9 제6장 제15조 (채용.배승 관리)①	이유 : 문구정리 “선원의 채용.승진” → “선원의 채용”로 변경 “선장.기관장의 채용.승진” → “선장.기관장의 채용”로 변경
110		P10 제6장 제16조 (인수인계) ⑤<신설>	이유 : 예비선.기장 단기업무 대행 시 인수인계 필요 ⑤선장 또는 기관장의 업무대행을 위해 예비 선장 또는 예비 기관장으로 교체 시에는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항해 기관 구명 -----, 2.연료유 및 윤활유 -----, 3.여객실 및 여객 -----, 4.관계기관 수발신 -----, 5.기타 주요 업무 등.
111		P11 제7장 제18조 (항해업무) ③1.	이유 : 자구수정 “항계내(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항계 내에서 운항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112		P12 제7장 제18조 (항해업무) ⑤1.	이유 : 문구삭제 “울도와 달리도 사이 항로는 주간에만 통행한다” 삭제

113	P14 제7장 제18조 (항해업무) ⑤6.	이유 : 중복 내용 삭제 “안전운항을” →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로 변경. 가.나.다. 항목 삭제
114	P15 제7장 제18조 (항해업무) ⑥4.6.	이유 : 자구수정 및 선박안전법상 용어와 통일 4.“가정박하여야하며, 가정박이” → “임시정박하여야하며, 임시정박이”로 변경 6.“운항조건에” →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로 변경
115	P15 제7장 제18조의2 (야간항해)<신설>	이유 : 여객선 야간운항 확대 추세에 따라 안전운항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 마련 제18조의2(야간항해)① ② ③ <신설>
116	P16 제7장 제19조 (입.출항시 업무)③	이유 : 여객선과 동일하게 임시승선자 관리 의무 명시 “본선에” →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본선에”로 변경
117	P18 제7장 제20조 (통신업무)②도표	이유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출항보고 - 보고내용 1.“출항항” → “출항항 및 목적항” 5.위험물 종류와 그 수량 <항목추가> 6.5번항목 6번“도착항 및 도착예정시간”
118	P19 제7장 제21조 (여객업무)⑦	이유 :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적용 “여객전담선원을” → “여객안전관리선원을”로 변경
119	P21 제7장 제22조 (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③	이유 : 쉬운 용어 사용 “주지하여야” → “알려야”로 변경
120	2020.10. P22 제7장 제23조 (화물관리)③2. 7.	이유 : 자구수정 2.“선장은 선적화물”→ “선장은 적재화물”로 “선내 작업원의” → “선내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로 변경 7.“선원으로 하여금” → “선원이”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
121	P23 제7장 제24조 (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① ②	이유 : 선박안전법 제28조 반영 및 용어 통일 ①“회사는” → “사업자 또는 선장은”로 “하며 관계기관으로 부터”→ “하며, 회사는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로 변경 ②“관계기관으로부터”→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로 “복원성 자료를 기록관리.유지하여”→ “사업자가 제공한 복원 성 자료를 유지.관리하여”로 변경
122	P24 제7장 제25조 (위험물 등의 취급)	이유 : 조건 명확화 4.“청소증명, 해당기관” → “청소증명 및 해당기관”로 변경
123	P25 제8장 제28조 (사고처리 시 준수 사항)5. 6.	이유 : 자구수정 5.“떠나서는 안될 것” → “떠나지 말 것”로 변경 6.“육상종업원은” → “육상근무자는”로 변경
124	P30 제9장 제34조 ⑤	이유 : 문구 추가 “거주구역은” → “거주구역 및 여객구역은”로 변경
125	P33 제10장 제41조 (여객선 이력장부 관리)①6.	이유 : 용어수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변경허가”로 변경

126		P33 제10장 제41조의2 <신설>	이유 : 여객선 안전정보 공개에 관한 해운법령 규정 명시 제41조의2(여객선 안전정보공개) ①사업자는 -----, 1. 2. 3. 4. 5. ②사업자는 -----.
127		P36 [붙임 목차] <항목추가>	이유 : 조직도 변경시 편의를 위해 본문 삭제 붙임 첨부 [붙임18] 안전관리조직도
128		P75 [붙임18] 안전관리 조직도	이유 : 조직도 변경시 편의를 위해 본문 삭제 붙임 첨부 [붙임18] 안전관리조직도 “조직도 첨부”
129		P4 제3장 제8조 (안전관리 조직) ② 2. 다.	이유:면허상 항로 변경 “비금(가산),도초(화도) 및” → “비금(가산) 및” 로 변경
130		P10 제7장 제17조 ①	이유:면허상 항로 변경 ①항로: “목포-도초” → “목포-가산” 로 변경
131	2020.10.	P12 제7장 제18조 (항해업무) ⑤ 1.2.	이유:면허상 항로 변경 1.운항항로 항로: “목포-도초” → “목포-가산” 로 변경 기항지: “안좌(읍동)-비금(가산)-비금(수치)” → “안좌(읍동)-비금(수치)” 로 변경 종착지: “도초(화도)” → “비금(가산)” 로 변경 운항시간: “2:10, 26마일, (48.1Km)” → “1:35, 21마일, (38.8Km)” 로 변경 2.중점 또는 기항지: “도초(화도)” 삭제
132		P13 제7장 제18조 (항해업무)⑤ 3.마.2) / 4.가.	이유:면허상 항로 변경 2)장애물: “서남문대교(비금/도초)” 삭제 가.출항/입항시 보고지점: “도초(화도)” 삭제
133		P37 [붙임1] 항로도	이유:면허상 항로 변경 항로도: “목포(북항)-도초(화도)” → “목포(북항)-비금(가산)” 로 변경
134		P9 제6장 제16조 (인수인계)①	이유:⑤항 신설(단기업무대행)에 따른 변경 ①“(휴가 등을 위한 일시적 변동 시에는 구두로 갈음 할 수 있다.)” → <삭제>



목 차



제1장 목적 및 정의	1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
제3조(안전관리 목표)	2
제4조(안전관리 방침)	3
제5조(방침의 숙지 및 확인)	3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3
제3장 안전관리 지도감독의 체계	4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4
제8조(안전관리조직)	4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임무	5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5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5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7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7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8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8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9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9
제15조(채용·배승관리)	9
제16조(인수인계)	9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10
제17조(여객선 재원 및 운항구역)	10
제18조(항해업무)	11
제18조의2(야간항해)	15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16



제20조(통신업무)	17
제21조(여객업무)	18
제22조(여객준수 사항의 전달)	20
제23조(화물관리)	21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23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23
제26조(정박 및 계류)	24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25
제8장 비상상황 대응	25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25
제29조(비상대응)	25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28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28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29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29
제33조(육상설비 점검)	30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30
제35조(유류관리)	31
제10장 자료관리	32
제36조(문서관리)	32
제37조(문서생산 등)	32
제38조(문서관리대장)	32
제39조(문서의 폐기)	33
제40조(해도관리)	33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33
제41조의2(여객선 안전정보공개)	33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34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34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35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35
제45조(규정의 적용)	35

【참고자료】

○ [붙임1] ~ [붙임18] 36~75

【붙임 목차】



[붙임 1] 항로도	-----	37
[붙임 2] 일반배치도	-----	38
[붙임 3] 인명구조장비 및 비상탈출로	-----	39
[붙임 4] 화재제어도	-----	40
[붙임 5] 차량적재도	-----	41~49
[붙임 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50
[붙임 7] 선원법정교육 목록	-----	51
[붙임 8]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	52,53
[붙임 9] 선박계획정비표	-----	54~60
[붙임 10] 비상부서 배치표	-----	61
[붙임 11]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	62~66
[붙임 12]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67
[붙임 13]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	68
[붙임 14] 선박 문서 보존연한	-----	69
[붙임 15] 문서관리대장	-----	70
[붙임 16] 내부심사절차서	-----	71,72
[붙임 17]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	73,74
[붙임 18] 안전관리조직도	-----	75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업무의 책임 및 업무수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자”란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여객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라 선박이나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를 확인·조사 또는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 해원을 말한다.
6.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7. “육상작업원”이란 육상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작업원”이란 선박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운항계획”이란 기점·종점, 기항지, 항행경로, 항해속력, 운항횟수, 출항시간, 계절 운항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운항기준도”란 항로(기종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표준운항시각, 항해속력,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기타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박의 항로도(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 정한 위험물을 말한다.
12. “차량적재도”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및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부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인한 차량의 배치 및 적재방법 등이 표시된 도면을 말한다.
13. “화물고박장치”란 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14. “화물의 적재한도”란 「선박안전법」 제28조의 복원성 유지 및 제12호의 차량적재도 등에 따른 차량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화물 등 선내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적재중량을 말하며 운항관리규정 심사 시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5.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16. “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전관리 목표) 회사는 관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선박의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
2.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3. 고객 만족
4. 여객 및 화물보호

제4조(안전관리 방침) 회사는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방침을 수립·시행한다.

1.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 준수
2.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비상대응훈련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4. 법령에서 규정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대 고객 서비스 강화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① 회사는 인명과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이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이행·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대한 이행·유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은 회사의 운항관리규정이 항상 양질의 수준으로 운영·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항 지양
3.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선원(예비원 포함)의 채용
4. 과승·과적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차량/화물 집계표 확인 및 정확한 화물 계측 실시
5.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원의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6. 위험물 적재·운송방법 숙지 및 관련법령 준수
7.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8.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제3장 안전관리 지도 감독의 체계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해상 직원의 책임, 권한,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안전운항을 위한 최신정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전관리조직) ① 회사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

② 주된사업소 와 영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주된사업소)

가. 기본사항

상호	소재지	연락처 (팩스)
비금농업협동조합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서담문로 791	061-275-5251 (061-275-8495)

나. 관할구역 : 전항로/ 전구간(총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전항로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인 지원을 하며, 여객선 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

2. 지점(영업소)

가. 기본사항

상호	소재지	연락처 (팩스)
비금농협 차도선사업소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중부로 1502-26	061)-244-5251 061)-245-2290

나. 관할구역 : 전항로 / 전구간 (담당)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기·종점항 목포(북항),안좌(읍동),암태(남강),비금(수치),비금(가산) 및 전 항로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본사(조합장)명을 받고, 선원 및 각 대표소(대표원 포함).선착장 시설등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③ 안전관리조직도는 [붙임18]과 같으며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임무 등

제9조(수석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수석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안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④ 사업자는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규정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운항 및 기타 수송의 안전 확보에 대해 업무를 총괄한다.
2.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행한다.
3. 선박의 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수송의 안전을 확보한다.
4. 안전관련 육상직원 및 육상작업원을 지휘하고,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5.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도록 선원을 지도·감독한다.
 6. 여객선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관련 증서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7.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시설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다.
 8. 여객의 승·하선시설 및 부잔교(육상시설 포함)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0.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이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11. 관계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선박의 변경, 항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 당해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선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신청한다.
 12. 운항관리규정 관련 문서를 관리한다.
 13.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규정 기타 비상대응체제를 이행하고 유지한다.
 14.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과 관련하여 선원 및 육상직원에게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15.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본선 실태를 점검한다.
 16. 여객선사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이행한다.
- ②수석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업무대행을 지정하며, 업무대행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비금농협차도선사업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여객선이 운항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10일 미만) 부재 시에는 회사가 경영층(또는 상급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대행자 및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휴대폰 등)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석안전관리책임자가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각주)을 가진 자로 업무대행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각주: 「해운법 시행령」 제12조의4와 관련한 별표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한 자)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육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총괄하여야 하므로 선원으로 승선할 수 없으며, 선원 또는 예비선원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① 여객담당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승선절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 협의 및 안전조치
3. 여객 승하선시설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총괄
4. 여객안전관리선원에 대한 교육·관리
5.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 보관·관리
6. 여객대피시설 등 여객선 내 여객시설에 대한 관리

② 화물담당자는 화물(위험물을 포함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물의 적재 및 하역에 관한 업무 총괄
2. 화물의 적재에 관한 선장과 업무협의 및 안전조치
3. 육상작업원에 대한 관리업무 총괄
4. 화물선적 작업완료 시 선장에게 화물목록 제출

③ 해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채용·배승·휴가에 관한 사항
2. 선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선원 직무교육
4. 제반증서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④ 공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수리 및 선용품 공급
2. 안전설비 보급 및 관리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객과 화물 보호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시행하고 「선원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필요한 경우, 선원복무방침을 수립하여 선원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인명, 여객선 및 환경보호와 화물보호를 위한 대응조치에 최우선적인 결정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에 물적·인적 지원 요청 권한을 갖는다.

④ 선장은 선박의 통상업무 중 여객관리는 갑판원 또는 여객안전관리선원, 정비관리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① 선장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제15조(채용·배승 관리) ①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선원의 채용 및 배승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선장·기관장의 채용 시에는 승무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지휘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선원 채용·승진에 있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③ 회사 및 선장은 선원과 선박 관련증서 및 선원 교육훈련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선원의 승선, 항해시간 별 적정 인원배치 및 승선선원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선원은 구두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

② 선장의 인수인계서는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선장 이외 선원의 인수인계서는 선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차하위자가 대행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의 인수인계서에 필요시 다음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상 업무 및 비상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임무와 책임
2. 선원의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요령

4.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관리

④ 필요시 선원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관련 교육을 위해 동승할 수 있다.

⑤ 선장 또는 기관장의 업무대행을 위해 예비 선장 또는 예비 기관장으로 교체 시에는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항해 기관 구명 소방 및 통신설비 작동 실태 및 결함 등 참고사항
2. 연료유 및 윤활유 잔량, 수급계획 또는 수급일정 등
3. 여객실 및 여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또는 정비 계획
4. 관계기관 수발신 공문철 및 주요 선박 증서
5. 기타 주요 업무 등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① 여객선 섬드리비금통합고속페리의 제원 및 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

선종	진수일자	총톤수	기관출력	
차도선	2016.6.30	580톤	1350kw×2대	
선박치수(m),길이(LOA)×폭×깊이		항해속력	항로	항해구역
71.65×16.00×3.00		13.5노트	목포-가산	평수

② 여객선 섬드리비금통합고속페리의 승선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승선인원 : 296명(여객정원 290명, 선원 6명)
2. 임시최대승선인원 : 446명(여객정원 440명, 선원6명)
3. 승무정원 : 3명 (선원은 최소4명 이상이 승선할 것.)

제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정항로 기상, 본선의 감항성, 화물종류, 적하상태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한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운항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및 일일 운항 종료 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화재예방
3. 수밀문, 선수문 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
4. 화물 적재상태
5. 여객 안전 확보 상태
6. 기관 작동상태 등

③ 선장은 시계제한, 악천후, 협수로 통행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출항 시 및 항계 내에서 운항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속력 등의 제한)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에서 정한 속력 12노트를 준수)
2. 시계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경우
3.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이 필요한 경우

④ 선장은 승무정원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 인원을 배정하여 운항한다.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항로 (가산-남강 거리:7마일,항해시간;35분)

항로	출발지(기점)	기항지	종착지	항해속력	운항시간
목포-가산	목포(북항)	안좌(읍동)-비금(수치)-	비금(가산)	13.5Kts	1:35 21마일 (38.8Km)
목포-가산	목포(북항)	암태(남강)	비금(가산)	13.5Kts	1:35 20마일 (37.0Km)

2. 기점·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위치)	종점 또는 기항지(위치)	거리 마일	총 거리 마일	총 항해시간
목포(북항) N34-48.27, E126-21.87	안좌(읍동) N34-45.59, E126-08.09	12 (22.2Km)		50분
	비금(가산) N34-45.60, E125-59.98	8 (14.8Km)	20 (37.0Km)	90분
	비금(수치) N34-44.70, E126-00.75	1 (1.8Km)	21 (38.8Km)	95분
목포(북항) N34-48.27, E126-21.87	암태(남강) N34-48.06, E126-07.07	13 (24.0Km)		55분
	비금(가산) N34-45.60, E125-59.98	7 (13.0Km)	20 (37.0Km)	90분

3. 항로상의 위험구역

가. 암초, 저수심

1) 암초 : 삼도부근(34-46-18N, 126-03-00E)

2) 저수심 : 노대도 남단 0.5마일 수심 2.1m(34-45-56N, 126-02-23E)

변도 등대 동방 0.7마일 수심 3.7m(34-45-14N, 126-11-15E)

맥도서방 0.5마일 수심 1m(34-47-14N, 126-18-18E)

팔금 서쪽등대 남서단 0.5마일 수심1.9m 34-47-00N, 126-04-30E

나. 사격 및 훈련구역

- 불무기도 해상

다. 어선조업·어장 및 교통 밀집 구간

1) 교통 밀집 구간 : 시아해

라. 관제구역·통항분리수역·특정해역

1) 관제구역: 목포 VTS(북항-변도등대)

2) 통항분리수역: 없음

마.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1) 협수로: 안좌·팔금도 수로에서 비금수도 구간, 장좌도 북단에서 맥도 구간
팔금(매도)-팔금(서근등대)

2) 장애물: (양식장) 안좌·팔금도 수로에서 비금수도 구간
(연도교교각)신안제1교(안좌/팔금도)

중앙대교(암태/팔금도)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장소

가. 출항/입항 시

연번	보고지점	위도, 경도	보고처
1	목포(북항)	34-48.27N, 126-21.87E	목포운항관리센터 목포 VTS
2	안좌(읍동)	34-45.59N, 126-08.09E	목포운항관리센터
3	비금(가산)	34-45.60N, 125-59.98E	목포운항관리센터
4	비금(수치)	34-44.70N, 126-00.75E	목포운항관리센터
5	암태(남강)	34-48.06N, 126-07.07E	목포운항관리센터

5. 「선원법」 제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은 다음과 같다.

구 간
가. 항구를 출입할 때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6.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 하여야 할 경우

7. 태풍 내습 시나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가. 태풍 내습 시 : 목포(북항, 여객선터미널) 및 선장이 선정한 안전한 해역

나. 기상악화 시 : 목포(북항, 여객선터미널)

8.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해양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붙임1」 항로도에 따라 운항한다.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운항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

조」와 관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상태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운항을 정지하여야 함

풍속	파고	가시거리
최대 12m/s 이상	최대파고 2.5m 이상	1km 이내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km 이내)에는 안전한 곳에 임시정박 하여야 하며, 임시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견시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할 수 있다.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따른다.

제18조의2(야간항해) ① 사업자는 야간운항(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 까지를 말한다) 중에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사 및 선장은 운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어장, 교각 등 항로상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2. 기항지 접안시설과 선박에 설치된 야간조명설비의 상태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야간운항 동안 선교 내 2인 이상의 항해당직체제를 유지하고, 육안 및 레이더를 통해 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하여야 하는 선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 ③ 선장은 출항 시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발견 시 수석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5.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6.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7.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자)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붙임 8」에 따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수석안전관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취급점이나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선수문 등 이상 유무
5.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목포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항 시 및 항로도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목포운항관리센터에 출·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고종류	보고시기	보고내용
출항보고	출항후 10분 이내	1. 출항시간, 출항항 및 목적항 2. 선원수(승선하여야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3. 승선인원, 하선인원 및 최대승선인원 초과 여부 4. 화물 적재량(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가. 화물 나. 차량 5. 위험물 종류와 그수량 6. 도착항 및 도착예정시간(ETA)
입항보고	입항10분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1. 입항(예정)시간 및 입항지 2. 이상 유무
위치보고	운항관리규정에 의한 위치보고지점 도착 시	1. 시간 및 위치 2. 현지 항로의 기상 3. 항로의 상태
출항 또는 운항중지 보 고	출항 또는 운항 할 수 없는 경우	1. 시간과 위치 2. 사유
기타사항 보 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의 종류와 그 수량
	비정상적인 운항이 발생된 경우	1. 시간과 위치 2. 그 내용
	항해 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원인이 있을 경우	1. 시간과 위치 2. 그 내용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1. 전달받은 시간 2. 사실 내용
	중간기항지에서 여객이 승하선할 경우 등	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수 2. 중간기항지 승선 여객수
	여객의 정원승선으로 중간기항지의 여객을 수송할 수 없게 된 경우	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 수 2. 중간기항지 예상 승선 여객 수
	출항 전 운항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기상 및 해상상태와 현지항로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1. 현지 기상 및 해상상태와 위치
	해당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항해 중 조난선박을 발견한 경우	1. 사실 내용과 위치 2. 구조방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선장은 「선원법」 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진·출입시간 보고 시에는 항계 내에서는 “채널14”, 항계 외에서는 “채널06”으로 교신한다.

⑤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긴급신고번호(119)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대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여객선 입구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

③ 여객의 승·하선은 선수문을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선수문을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본선 선원 및 선사 육상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⑦ 선장은 운항관리자가 없는 기항지의 경우 본선 선원 중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⑨ 「해운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보관장소 및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⑩ 선내에서 승선권 발매 시 승선권의 해당란에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항 즉시 사무실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항시간별로 분리하여 수밀이 되는 용기에 보관 후 입항 즉시 사무실로 발송한다.

⑪ 선장은 차량적재 시 차량 내 승객이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⑫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⑬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제한구역」, 「출입금지」, 「통제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수엄금」 또는 「손대지 맙시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 「머리조심」 표지판을 부착한다.
4. 선내 편의시설(자판기, 정수기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를 파악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① 선장은 여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전달할 때에는 여객 승선 중 또는 승선 완료 직후에 모니터,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시범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객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한국어 방송에 이어서 외국어로 방송한다.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4. 선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금지
5. 정원·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③ 여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승·하선 질서의 유지
2. 구명조끼, 구명설비 및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3. 비상대피로 파악 등 비상 시 행동요령
4. 항행시간, 해상상태 및 입·출항 시 예정시간
5. 선내에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의 취급방법
6. 여객이 소지한 위험물에 대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7. 긴급신고 번호 119
8. 기타 여객이 알아야 할 사항

제23조(화물관리) ① 차량, 화물의 적재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적재한도 : 293.981톤, 일반화물 적재한도 : 2톤
가. 차량의 최대 적재 수

차종(수량)	소형 자동차(66대)
	중형 자동차(55대) + 소형 자동차(2대)
	대형 자동차(40대)
	5톤 트럭(15대) + 대형 자동차(12대)
	19.5톤 트럭(8대) + 대형 자동차(15대)
	25톤 트럭(6대) + 5톤 트럭(3대) + 대형 자동차(12대)
	25.5톤 덤프트럭(5대) + 5톤 트럭(3대) + 대형 자동차(20대)
	25톤 트레일러(4대) + 5톤 트럭(3대) + 대형 자동차(15대)
	45승 버스(5대) + 5톤 트럭(3대) + 대형 자동차(12대)
	6㎡믹서 트럭(9대) + 대형 자동차(20대)
	24키탱크로리(6대) + 5톤 트럭(3대) + 대형 자동차(12대)
	트랙터(10대) + 대형 자동차(27대)
	포크레인(4대) + 19.5톤 트럭(3대) + 대형 자동차(15대)
	펌프카(2대) + 대형 자동차(27대)
	50톤 크레인(2대) + 대형 자동차(27대)
	25톤 트럭(6대) + 대형 자동차(14대)
25톤 트럭(6대) + 대형 자동차(15대)	

② 차량 및 화물의 고박장치 비치수량은 다음과 같다.

품명	수량	파단력/안전 하중(S.W.L)	용도	보관장소
고박용 밴드	264	2톤 /0.5톤	승용차고박용	차량상갑판
고박용 밴드	72	5톤 /1.25톤	5톤이상 용도	차량상갑판

③ 선장이 일반화물 및 차량화물의 적재로 인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적재방법은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선장은 적재화물(차량, 화물)의 종류, 수량을 확인하고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적재 시 선내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그 외의 장소(갑판, 통로)에는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화물은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출항 5분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하여야 한다.
6. 선장은 화물고박장치도 「붙임5 차량적재도」에 따라 일반(차량)화물의 적재상태 및 복원성을 확인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 가. 차량간격은 600mm 이상이 되도록 적재한다.
 - 나. 차량구역 입구에는 차량적재도, 적재중량, 적재대수, 차량 적재 시의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다. 차량 갑판 내의 소방설비, 출입구, 계단 주위의 1m 이내 및 통로에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 라. 기타 사항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및 화물 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7. 선장은 여객선 운항 중 선원이 차량, 화물의 고박상태 등 이상 유무를 매시간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화물(차량)적재도를 차량 갑판상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복원성 자료를 유지·관리하여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목포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위험물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위험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해당 위험물(휴대품 포함)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위험물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적재하지 아니한다.
3. 여객이 휴대한 위험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에 한하여 적재가 가능하며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이 수거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험물 보관장소 : 우현 선수 창고]
4. 위험물 적재차량이 공(空)탱크인 경우 청소증명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가스안전증명이 있으면 선적할 수 있다.
5. 적재관리 책임자는 선장이 지정하며,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표시하고 일반화물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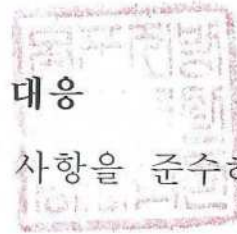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관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선적되거나 남아있는 화물의 상태 및 양, 배치
5. 선박 폐수량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화기작업
4. 여객승선구역 작업
5.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6.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제8장 비상상황 발생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지 말것
6. 육상근무자는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 「붙임 10」를 작성하여 조타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 3. 조타기 고장
-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등 인명사고)
- 6. 해양오염 등

- ② 수석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 「붙임3」 또는 그림, 비상 신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붙임3」, 여객행동요령 「붙임12」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출항 후 여객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119)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조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선장은 비상상황발생시 경고방송, 기적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피 지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붙임11,12」의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여객의 행동요령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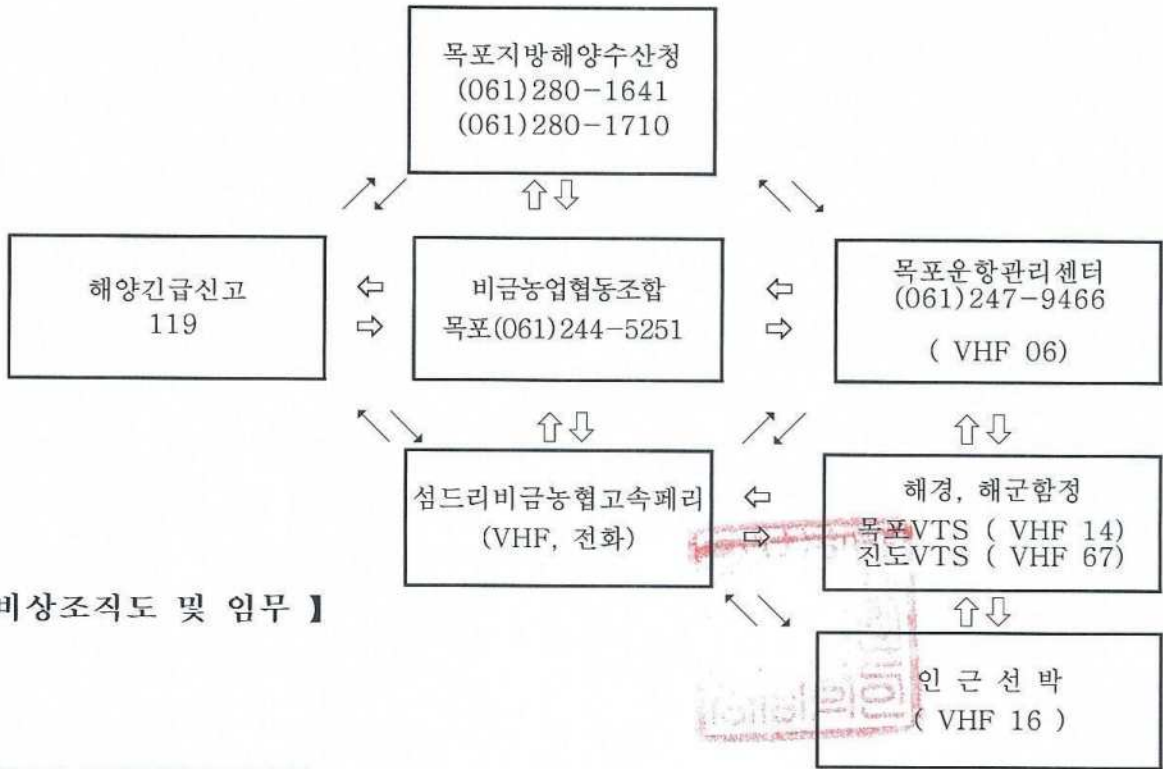
【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장소 】

비상상황		퇴 선	
1구역	2구역	1구역	2구역
선수램프 좌현 (기관장담당)	선수램프 우현 (갑판원담당)	선수램프 좌현 (기관장담당)	선수램프우현 (갑판원담당)

- ⑤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을 한다.

【 비상상황 연락기관 】



【 비상조직도 및 임무 】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한다.

가. 비금 신안대우병원(전화번호 061-262-3301)

나. 목포한국병원(061-270-5500)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현장을 보존한다.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며 입항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목포운항관리센터 및 목포해양경찰서에 제출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호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교관 요원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선사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및 교육시행주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기	대상자
선내숙지훈련		수시	모든 선원
해상인명 안전훈련	소방훈련	매 10일 마다	모든 선원
	퇴선훈련	매 10일 마다	모든 선원
해양사고 대응훈련	선체손상 대처훈련 - 충돌 및 좌초 - 추진기관 고장 등 - 악천후대비 등		모든 선원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	해상추락	모든 선원
		밀폐공간에서의 구조	모든 선원
	비상조타훈련		모든 선원
기름유출 대처훈련		모든 선원	

- ⑤ 선원 법정교육은 「붙임7」 과 같이 실시한다.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 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운항관리자 미 배치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 조치 후 출항하여야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않는 결함사항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여객선 정기점검은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례점검, 특별점검, 노후선특별점검은 별지 제3호부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목포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운항관리센터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붙임13」 과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 「붙임9」 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판 보기류는 접·이안 시 및 하역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그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착부에 대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 및 여객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⑦ 기적, 호중 등의 비치상태 및 항해등의 작동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 ⑧ 구멍, 소화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⑨ 항해 중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소, 긴급조치 내용 등을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⑩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제35조(유류 관리)**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자재 배치, 당직인원 배치 등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기름기록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할 경우 즉시 유류 보급선과 선장 및 수석안전관리책임자 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다. 선장 및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자료관리

제36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은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문서관리담당자는 기관장으로 정하며 부서 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장 및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상위직급자
3. 승인 : 선 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8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 「붙임15」 문서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장은 “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해도관리) ① 선장은 항행 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해도 및 수로 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한다.

② 선장은 본선에서 보유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변경허가 대상을 말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여객선 안전정보공개) ① 사업자는 「해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안전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 선령,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사고 이력(「해사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4.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5. 「해운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② 사업자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旗)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검토 및 평가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적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 「붙임16」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추월**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를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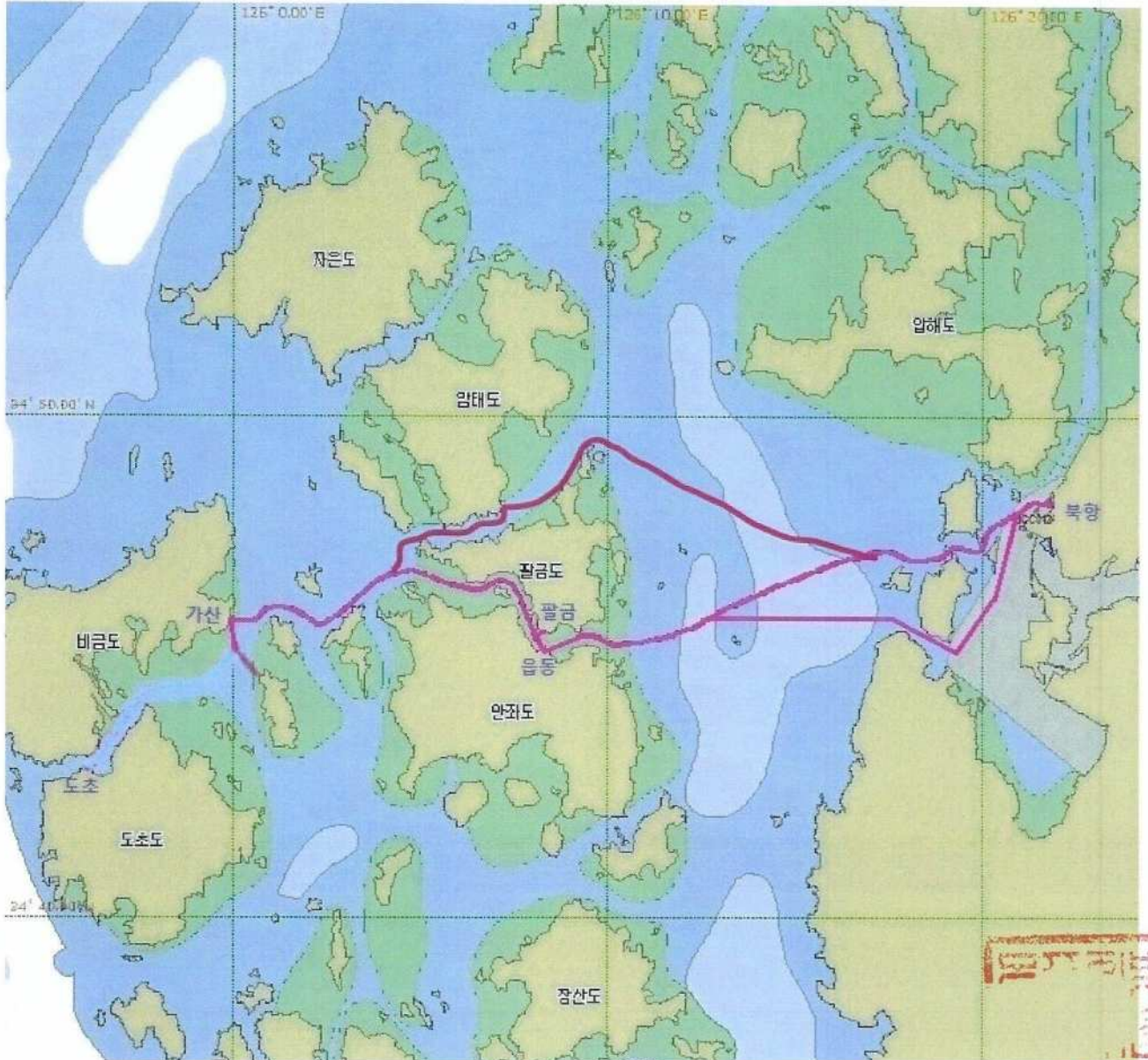
②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의2호가목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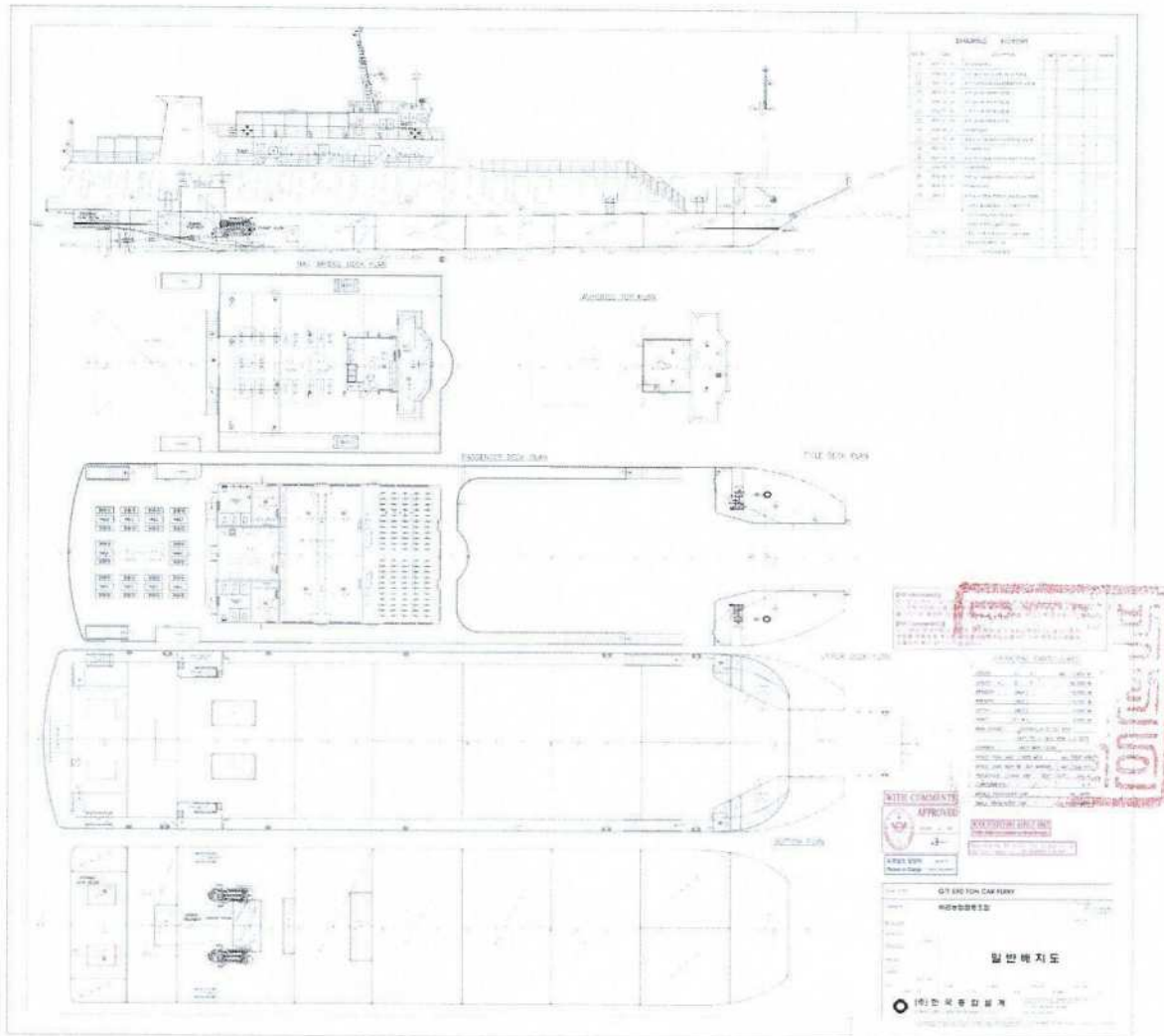
【붙임 목차】

- [붙임 1] 항로도
- [붙임 2] 일반배치도
- [붙임 3] 인명구조장비 및 비상탈출로
- [붙임 4] 화재제어도
- [붙임 5] 차량적재도
- [붙임 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붙임 7] 선원법정교육 목록
- [붙임 8]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 [붙임 9] 선박계획정비표
- [붙임 10] 비상부서 배치표
- [붙임 11]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 [붙임 12]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붙임 13]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 [붙임 14] 선박 문서 보존연한
- [붙임 15] 문서관리대장
- [붙임 16] 내부심사절차서
- [붙임 17]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 [붙임 18] 안전관리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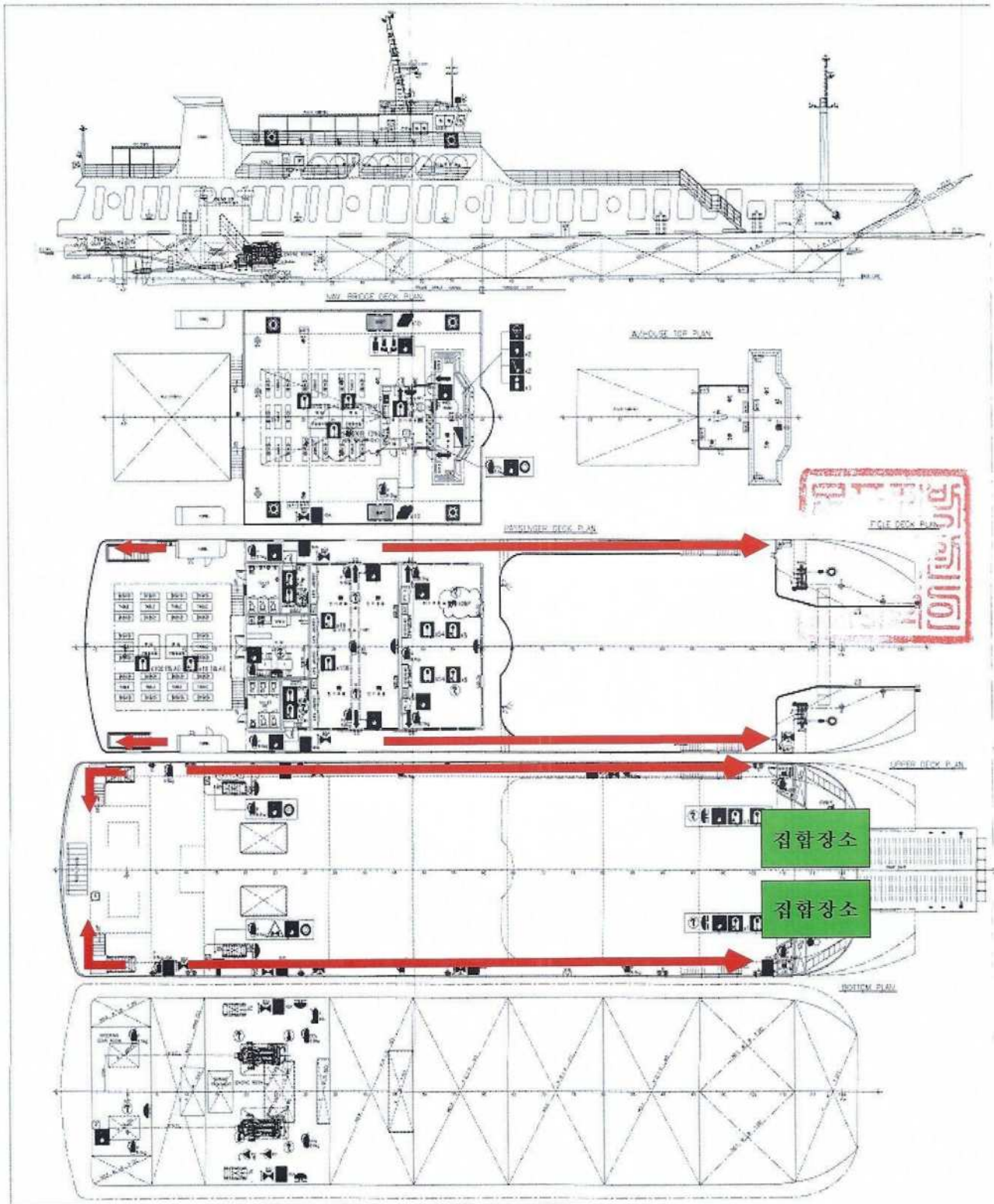
[붙임1] 항로도



[붙임 2] 일반배치도



[붙임3] 인명구조장비 및 비상탈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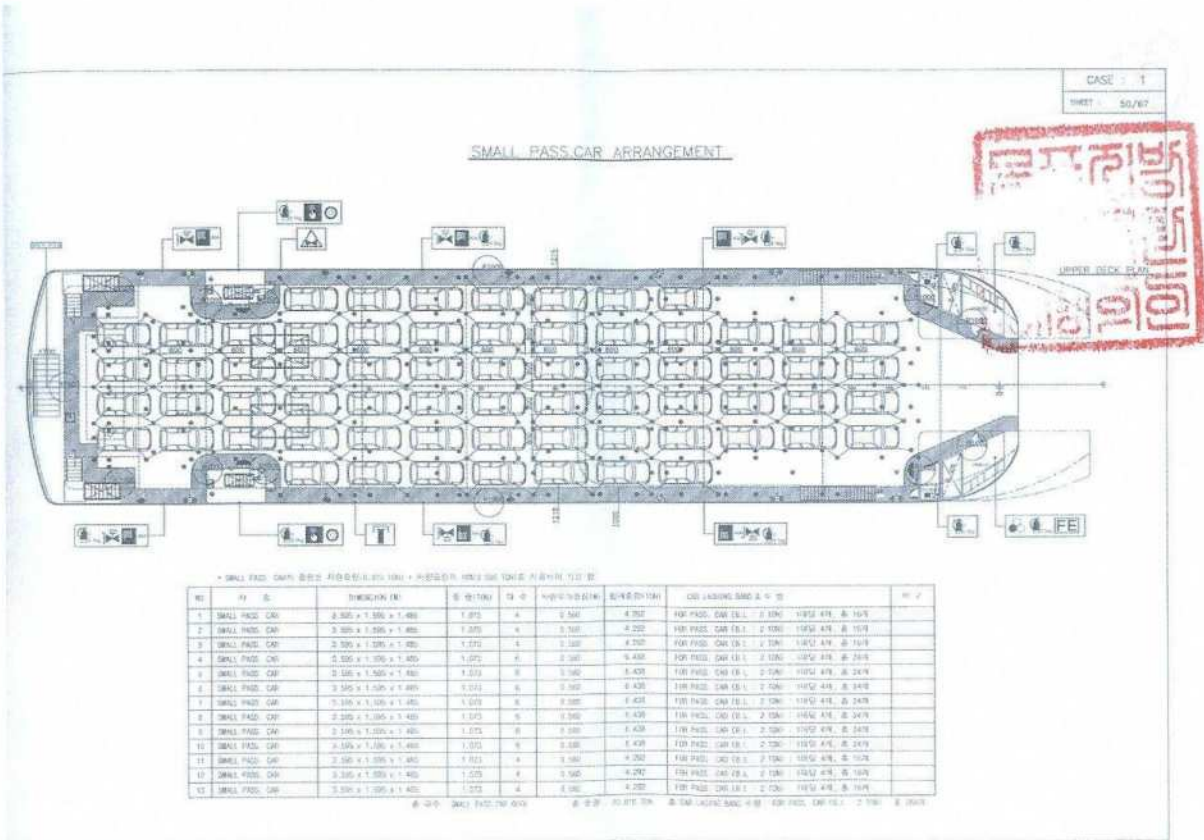
[붙임 4] 화재제어도

도형	소화기 종류	계	위치				
			타기실	기관실	차량갑판	객실	조타실
【소화기】		28	2	3	12	9	2
	이동식 포말소화기(45ℓ)	1	0	1	0	0	0
	휴대식 분말소화기(6.5kg)	24	2	0	12	9	1
	휴대식 이산화탄소 소화기(6.8kg)	3	0	2	0	0	1
【소화장치】							
	소화전	11	0	2	6	2	1

※ 선내 소화기(28) 및 소화전(11) 현황 및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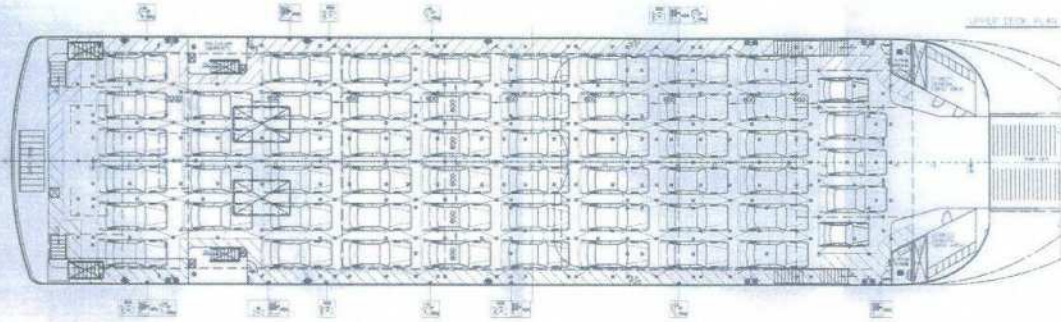


[붙임 5] 차량적재도





MIDDLE PASS. CAR ARRANGEMEN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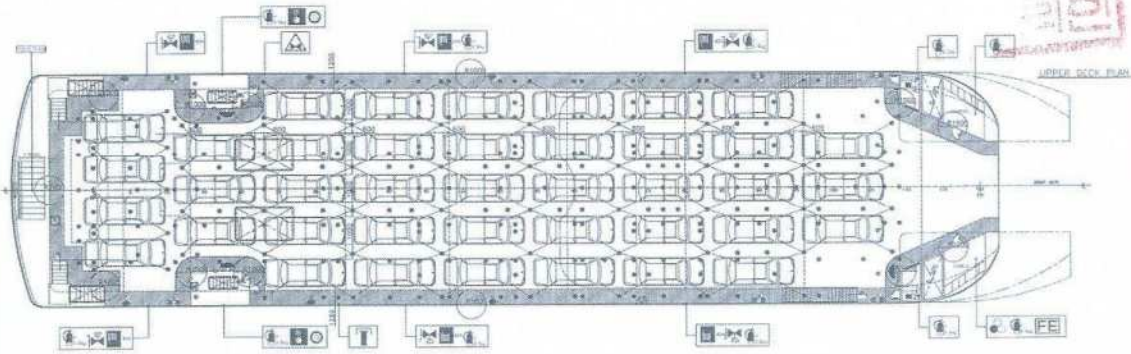


MIDDLE PASS. CAR ARR. 11ROW(130 TON) + 11ROW(130 TON) 12ROW(130 TON)
 SMALL PASS. CAR ARR. 11ROW(130 TON) + 11ROW(130 TON) 12ROW(130 TON)

NO	차종	DIMENSION (M)	승객 (TON)	좌석	승객면적 (㎡)	승객 밀도 (TON/㎡)	CAR LAYOUT SIZE & #	비고
1	MIDDLE PASS. CAR	4.820 x 1.820 x 1.470	1740	3	0.541	3.247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2	SMALL PASS. CAR	3.340 x 1.540 x 1.480	1072	2	0.536	2.148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3	MIDDLE PASS. CAR	4.820 x 1.820 x 1.470	1740	6	0.290	10.494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4	MIDDLE PASS. CAR	4.820 x 1.820 x 1.470	1740	6	0.290	10.494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5	MIDDLE PASS. CAR	4.820 x 1.820 x 1.470	1740	6	0.290	10.494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6	MIDDLE PASS. CAR	4.820 x 1.820 x 1.470	1740	6	0.290	10.494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7	MIDDLE PASS. CAR	4.820 x 1.820 x 1.470	1740	6	0.290	10.494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8	MIDDLE PASS. CAR	4.820 x 1.820 x 1.470	1740	6	0.290	10.494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9	MIDDLE PASS. CAR	4.820 x 1.820 x 1.470	1740	6	0.290	10.494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10	MIDDLE PASS. CAR	4.820 x 1.820 x 1.470	1740	4	0.541	6.896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11	MIDDLE PASS. CAR	4.820 x 1.820 x 1.470	1740	6	0.290	10.494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 11F: MIDDLE PASS. CAR 11R / SMALL PASS. CAR 2R ※ 12F: 100 X 6 & 21X

PREMIUM PASS. CAR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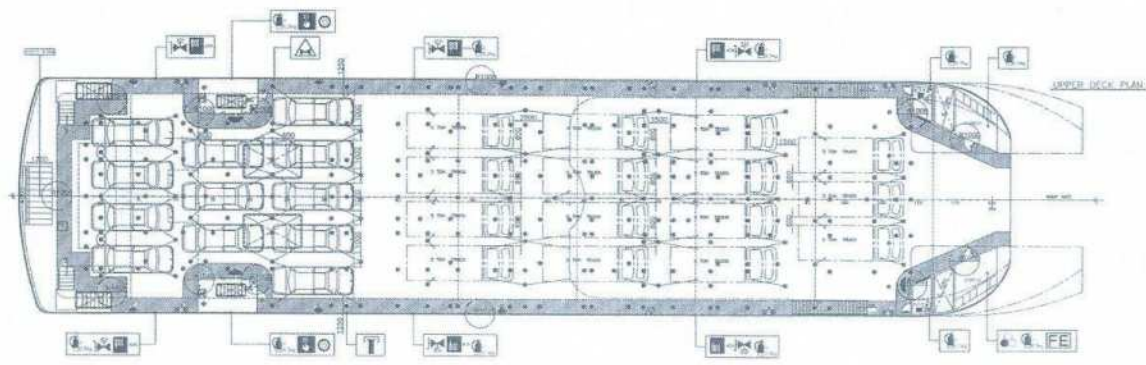
PREMIUM PASS. CAR ARR. 10ROW(130 TON) + 10ROW(130 TON) 12ROW(130 TON) 12ROW(130 TON)

NO	차종	DIMENSION (M)	승객 (TON)	좌석	승객면적 (㎡)	승객 밀도 (TON/㎡)	CAR LAYOUT SIZE & #	비고
1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50	2,340	3	0.780	7,020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2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50	2,340	5	0.468	10,080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3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50	2,340	5	0.468	10,080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4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50	2,340	5	0.468	10,080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5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50	2,340	5	0.468	10,080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6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50	2,340	5	0.468	10,080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7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50	2,340	5	0.468	10,080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8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50	2,340	3	0.780	7,020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9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50	2,340	4	0.585	8,460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10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50	2,340	4	0.585	8,460	FOR PASS. CAR (DL. 2 TON) 100 X 6 & 21X	

※ 10F: PREMIUM PASS. CAR 10R ※ 12F: 100 X 6 & 21X ※ 13F: 100 X 6 & 21X

CASE 3
 SHEET 5 of 7
 2017.05.15
 2017.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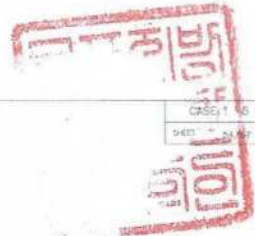
5TON TRUCK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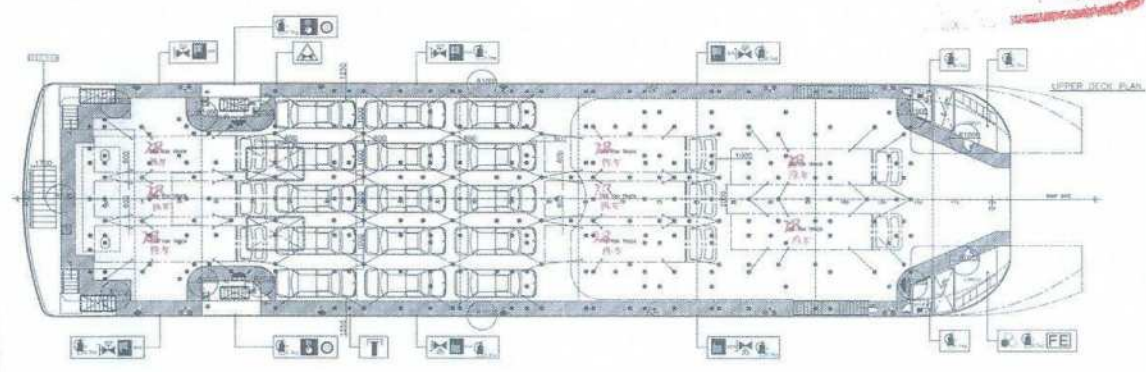
* PREMIUM PASS, CASY, 동양은 적당중량(1,500, 1,000) + 시멘트중량(1000, 200, 100)을 기본으로 하도 함

NO	차종	중량(톤)	길이(미터)	폭(미터)	중량(톤)	중량(톤)	중량(톤)	중량(톤)
1	5TON TRUCK	7,100 x 2,400 x 2,800	11,400	3	1,500	27,200	FOR TRUCK 10.0, 5.000, 1000 400, 8, 1200	
2	5TON TRUCK	7,100 x 2,400 x 2,800	11,400	4	1,500	41,800	FOR TRUCK 10.0, 5.000, 1000 400, 8, 1500	
3	5TON TRUCK	7,100 x 2,400 x 2,800	11,400	4	1,500	41,800	FOR TRUCK 10.0, 5.000, 1000 400, 8, 1500	
4	5TON TRUCK	7,100 x 2,400 x 2,800	11,400	4	1,500	41,800	FOR TRUCK 10.0, 5.000, 1000 400, 8, 1500	
5	PREMIUM PASS, CASY	3,400 x 1,900 x 1,400	2,300	3	0,900	11,800	FOR PASS, CASY (E.S.), 2,000, 1000 400, 8, 2000	
6	PREMIUM PASS, CASY	3,400 x 1,900 x 1,400	2,300	3	0,900	7,600	FOR PASS, CASY (E.S.), 2,000, 1000 400, 8, 1200	
7	PREMIUM PASS, CASY	3,400 x 1,900 x 1,400	2,300	3	0,900	5,800	FOR PASS, CASY (E.S.), 2,000, 1000 400, 8, 1000	

10.0 5TON TRUCK 100 # 2.000 100,000 # CASY LADING BAND C-00 FOR TRUCK 10.0, 5.000, 8, 1500
 PREMIUM PASS, CASY 100 # 100,000 100 FOR PASS, CASY (E.S.), 2,000, 8, 400



10.5TON TRUCK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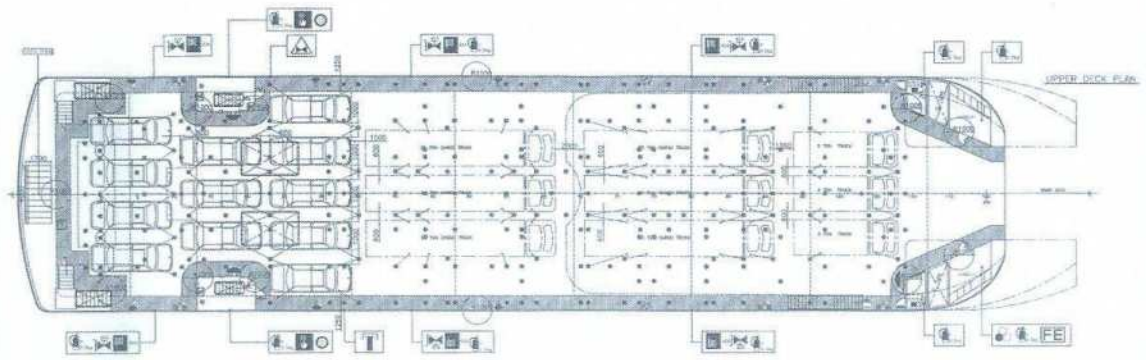


* PREMIUM PASS, CASY, 동양은 적당중량(1,500, 1,000) + 시멘트중량(1000, 200, 100)을 기본으로 하도 함

NO	차종	중량(톤)	길이(미터)	폭(미터)	중량(톤)	중량(톤)	중량(톤)	중량(톤)
1	10.5TON TRUCK	11,870 x 2,400 x 2,800	32,300	2	1,800	64,800	FOR TRUCK 10.0, 5.000, 1000 400, 8, 1600	
2	10.5TON TRUCK	11,870 x 2,400 x 2,800	32,300	2	1,800	38,300	FOR TRUCK 10.0, 5.000, 1000 400, 8, 2400	
3	PREMIUM PASS, CASY	3,400 x 1,900 x 1,400	2,300	2	0,900	11,800	FOR PASS, CASY (E.S.), 2,000, 1000 400, 8, 2000	
4	PREMIUM PASS, CASY	3,400 x 1,900 x 1,400	2,300	2	0,900	11,800	FOR PASS, CASY (E.S.), 2,000, 1000 400, 8, 2000	
5	PREMIUM PASS, CASY	3,400 x 1,900 x 1,400	2,300	3	0,900	11,800	FOR PASS, CASY (E.S.), 2,000, 1000 400, 8, 2000	
6	10.5TON TRUCK	11,870 x 2,400 x 2,800	32,300	3	1,800	90,300	FOR TRUCK 10.0, 5.000, 1000 400, 8, 2400	

10.0 10.5TON TRUCK 60 # 2.000 100,000 100 # CASY LADING BAND C-00 FOR TRUCK 10.0, 5.000, 8, 1600
 PREMIUM PASS, CASY 100 # 100,000 100 FOR PASS, CASY (E.S.), 2,000, 8,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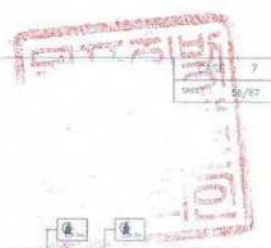
25TON CARGO TRUCK & 5TON TRUCK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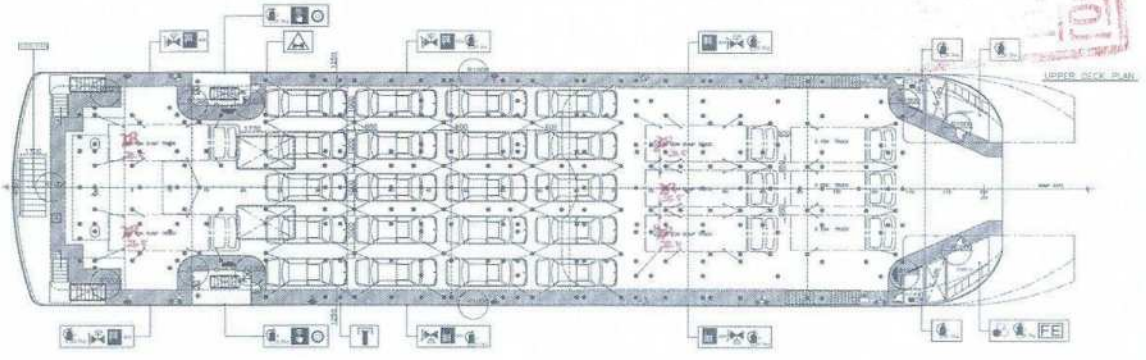
* PREMIUM FACIL. CAPN. SÖMÖR. YERLEŞİMİNE İLİŞKİN - YERLEŞİMİN İZLENİMLİ OLARAK YERLEŞİM İZLENİMLİ

NO	ARAÇ ADI	BOYUTLARI (M)	BOYUTLARI (M)	YERLEŞİM YERİ	YERLEŞİM YERİ	YERLEŞİM YERİ	YERLEŞİM YERİ
1	5TON TRUCK	7.100 x 2.400 x 2.800	10.400	3	1.500	37.200	FÖR TRUCK (S.L.) 5.100' 1450' 410' B. 5170
2	25TON CARGO TRUCK	12.770 x 2.400 x 2.240	16.570	2	1.500	116.300	FÖR TRUCK (S.L.) 5.100' 1450' 410' B. 5170
3	25TON CARGO TRUCK	12.770 x 2.400 x 2.240	16.570	2	1.500	116.300	FÖR TRUCK (S.L.) 5.100' 1450' 410' B. 5170
4	PREMIUM FACIL. CAPN.	5.400 x 1.900 x 1.400	2.300	3	0.500	11.800	FÖR FACIL. CAPN. (S.L.) 2.100' 1100' 410' B. 2010
5	PREMIUM FACIL. CAPN.	5.400 x 1.900 x 1.400	2.300	3	0.500	11.800	FÖR FACIL. CAPN. (S.L.) 2.100' 1100' 410' B. 2010
6	PREMIUM FACIL. CAPN.	5.400 x 1.900 x 1.400	2.300	4	0.500	19.000	FÖR FACIL. CAPN. (S.L.) 2.100' 1100' 410' B. 2010

14.5' 5TON TRUCK 34 25.0' 25TON CARGO TRUCK 14 5.5' 5TON FACIL. CAPN. 14
 25.0' 25TON CARGO TRUCK 14 5.5' 5TON FACIL. CAPN. 14



25 TON DUMP TRUCK & 5 TON TRUCK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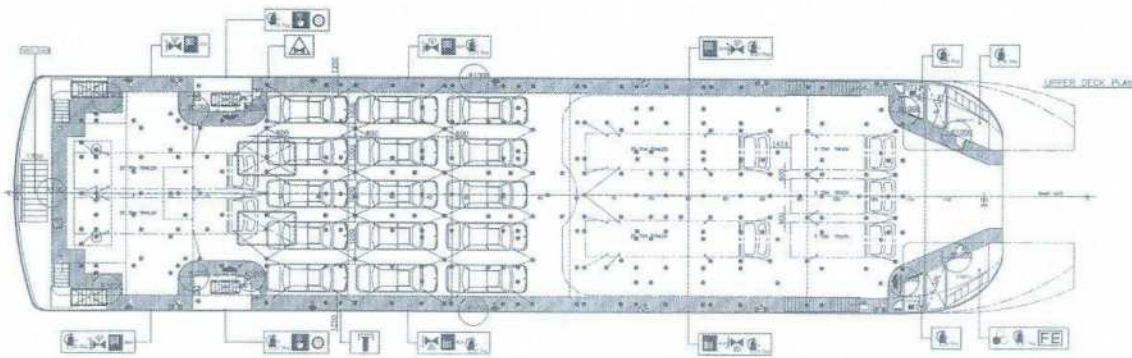


* PREMIUM FACIL. CAPN. SÖMÖR. YERLEŞİMİNE İLİŞKİN - YERLEŞİMİN İZLENİMLİ OLARAK YERLEŞİM İZLENİMLİ

NO	ARAÇ ADI	BOYUTLARI (M)	BOYUTLARI (M)	YERLEŞİM YERİ	YERLEŞİM YERİ	YERLEŞİM YERİ	YERLEŞİM YERİ
1	5TON TRUCK	7.100 x 2.400 x 2.800	10.400	3	1.500	37.200	FÖR TRUCK (S.L.) 5.100' 1450' 410' B. 5170
2	25.5TON DUMP TRUCK	8.650 x 2.400 x 2.370	16.500	2	1.500	117.500	FÖR TRUCK (S.L.) 5.100' 1450' 410' B. 5170
3	PREMIUM FACIL. CAPN.	5.400 x 1.900 x 1.400	2.300	3	0.500	11.800	FÖR FACIL. CAPN. (S.L.) 2.100' 1100' 410' B. 2010
4	PREMIUM FACIL. CAPN.	5.400 x 1.900 x 1.400	2.300	3	0.500	11.800	FÖR FACIL. CAPN. (S.L.) 2.100' 1100' 410' B. 2010
5	PREMIUM FACIL. CAPN.	5.400 x 1.900 x 1.400	2.300	3	0.500	11.800	FÖR FACIL. CAPN. (S.L.) 2.100' 1100' 410' B. 2010
6	PREMIUM FACIL. CAPN.	5.400 x 1.900 x 1.400	2.300	3	0.500	11.800	FÖR FACIL. CAPN. (S.L.) 2.100' 1100' 410' B. 2010
7	25.5TON DUMP TRUCK	8.650 x 2.400 x 2.370	16.500	2	1.500	117.500	FÖR TRUCK (S.L.) 5.100' 1450' 410' B. 5170

14.5' 5TON TRUCK 34 25.5' 25.5TON DUMP TRUCK 14 5.5' 5TON FACIL. CAPN. 14
 25.5' 25.5TON DUMP TRUCK 14 5.5' 5TON FACIL. CAPN. 14

25 TON TRAILER & 5TON TRUCK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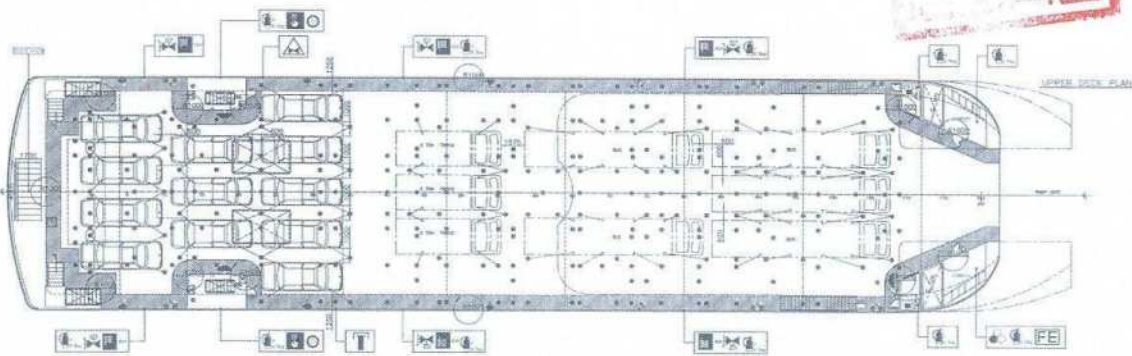
* 견출된 화물, 장비, 용구 등의 하중중립점 및 무게 중심점의 위치는 각 화물, 장비, 용구의 견출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NO	기종	시공용(톤)	중립점(톤)	위.고	하중중립점(미터)	중심점(미터)	중립점(미터)	중심점(미터)	중립점(미터)	중심점(미터)	중립점(미터)	중심점(미터)
1	5TON TRUCK	7,100 x 2,450 x 2,800	10,400	0	1.570	21,700						
2	25TON TRAILER	17,400 x 2,500 x 2,800	20,700	2	1.550	41,800						
3	PREMIUM PASSENGER CAR	5,400 x 1,900 x 1,400	7,300	0	0.500	14,200						
4	PREMIUM PASSENGER CAR	5,400 x 1,900 x 1,400	7,300	0	0.500	14,200						
5	PREMIUM PASSENGER CAR	5,400 x 1,900 x 1,400	7,300	0	0.500	14,200						
6	25TON TRAILER	17,400 x 2,500 x 2,800	20,700	2	1.550	41,800						

* 1번 : 5TON TRUCK 20개 * 2번 : 25TON TRAILER 10개 * 3번 : 25TON TRAILER 10개
 * 4번 : PREMIUM PASSENGER CAR 100개 * 5번 : PREMIUM PASSENGER CAR 100개



BUS & 5TON TRUCK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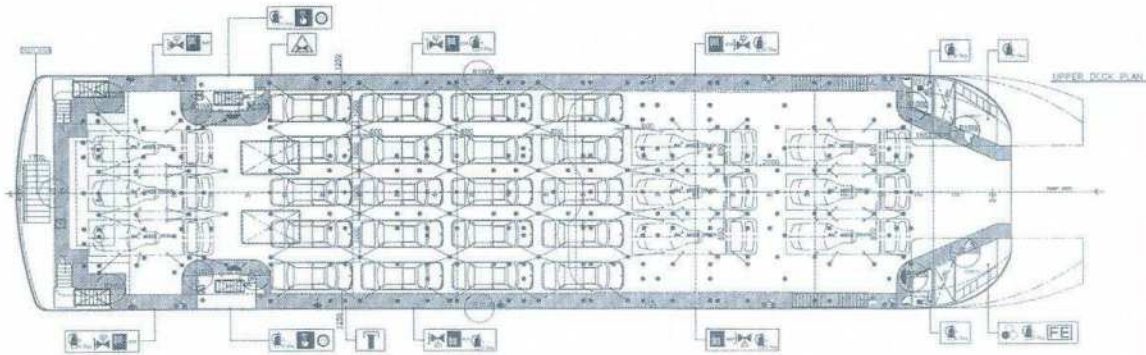


* 견출된 화물, 장비, 용구 등의 하중중립점 및 무게 중심점의 위치는 각 화물, 장비, 용구의 견출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NO	기종	시공용(톤)	중립점(톤)	위.고	하중중립점(미터)	중심점(미터)	중립점(미터)	중심점(미터)	중립점(미터)	중심점(미터)	중립점(미터)	중심점(미터)
1	BUS	11,000 x 2,400 x 3,000	14,300	2	1.500	28,200						
2	BUS	11,000 x 2,400 x 3,000	14,300	2	1.500	28,200						
3	5TON TRUCK	7,100 x 2,450 x 2,800	10,400	0	1.570	21,700						
4	PREMIUM PASSENGER CAR	5,400 x 1,900 x 1,400	7,300	0	0.500	14,200						
5	PREMIUM PASSENGER CAR	5,400 x 1,900 x 1,400	7,300	0	0.500	14,200						
6	PREMIUM PASSENGER CAR	5,400 x 1,900 x 1,400	7,300	0	0.500	14,200						

* 1번 : BUS 20개 * 2번 : BUS 20개 * 3번 : 5TON TRUCK 10개 * 4번 : PREMIUM PASSENGER CAR 100개
 * 5번 : PREMIUM PASSENGER CAR 100개

6M³ MIXER TRUCK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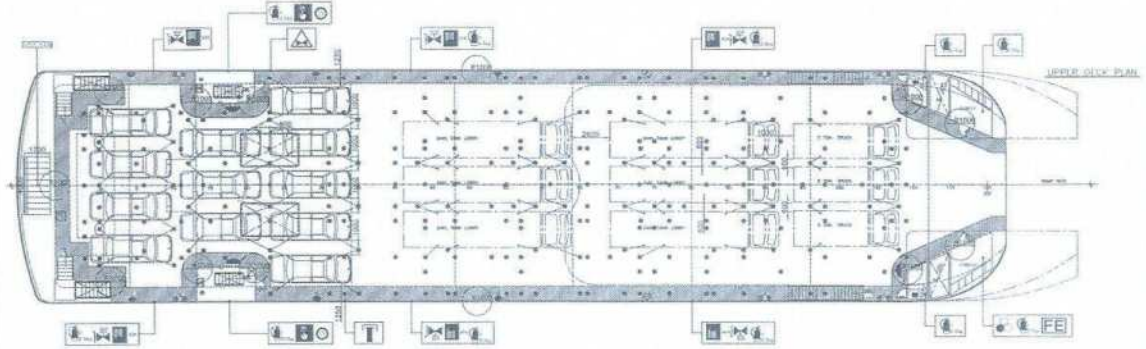
* PREMIER P&S: 6M³ 믹서 차량 18대 배치 (18 대) + 차량용 주차장 18개 배치 (18 대) + 차량용 주차장 18개 배치 (18 대)

NO	차종	차량 크기 (mm)	길이 (m)	폭 (m)	높이 (m)	중량 (톤)	배치 면적 (㎡)	배치 방법	배치 수	총 배치 면적 (㎡)	차량 배치 위치
1	6M ³ MIXER TRUCK	6,310 x 2,400 x 2,820	26.700	3	1.900	26.700	11,820	F&S TRUCK (S.L.)	6	65,320	① 1, 2, 3, 4, 5, 6
2	6M ³ MIXER TRUCK	6,310 x 2,400 x 2,820	26.700	3	1.900	26.700	11,820	F&S TRUCK (S.L.)	6	65,320	② 7, 8, 9, 10, 11, 12
3	PREMIER P&S: CAB	5,400 x 1,900 x 1,400	2,300	3	0.500	11.820	11,820	F&S P&S: CAB (S.L.)	6	65,320	③ 13, 14, 15, 16, 17, 18
4	PREMIER P&S: CAB	5,400 x 1,900 x 1,400	2,300	3	0.500	11.820	11,820	F&S P&S: CAB (S.L.)	6	65,320	④ 19, 20, 21, 22, 23, 24
5	PREMIER P&S: CAB	5,400 x 1,900 x 1,400	2,300	3	0.500	11.820	11,820	F&S P&S: CAB (S.L.)	6	65,320	⑤ 25, 26, 27, 28, 29, 30
6	PREMIER P&S: CAB	5,400 x 1,900 x 1,400	2,300	3	0.500	11.820	11,820	F&S P&S: CAB (S.L.)	6	65,320	⑥ 31, 32, 33, 34, 35, 36
7	6M ³ MIXER TRUCK	6,310 x 2,400 x 2,820	26.700	3	1.900	26.700	11,820	F&S TRUCK (S.L.)	6	65,320	⑦ 37, 38, 39, 40, 41, 42

※ 12.0 - 15.0M TRUCK 3대, 24.0M TRUCK 1대, 6M³ MIXER TRUCK 18대, 6M³ MIXER TRUCK 18대
 ※ 12.0 - 15.0M TRUCK 3대, 24.0M TRUCK 1대, 6M³ MIXER TRUCK 18대, 6M³ MIXER TRUCK 18대



24KL TANK LORRY & 5TON TRUCK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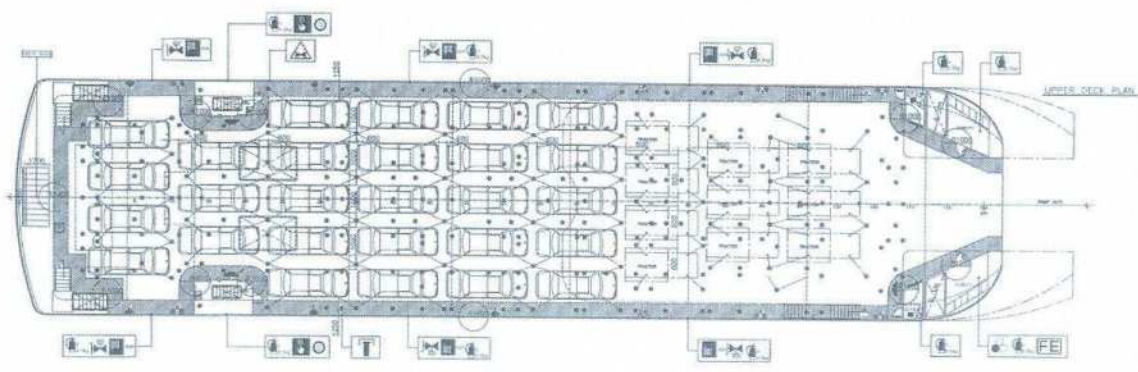


* PREMIER P&S: 24KL 탱크 차량 18대 배치 (18 대) + 차량용 주차장 18개 배치 (18 대) + 차량용 주차장 18개 배치 (18 대)

NO	차종	차량 크기 (mm)	길이 (m)	폭 (m)	높이 (m)	중량 (톤)	배치 면적 (㎡)	배치 방법	배치 수	총 배치 면적 (㎡)	차량 배치 위치
1	5TON TRUCK	7,100 x 2,400 x 2,800	19,200	3	1.900	21,200	11,820	F&S TRUCK (S.L.)	6	65,320	① 1, 2, 3, 4, 5, 6
2	24KL TANK LORRY	11,700 x 2,400 x 2,800	32,000	3	1.900	36,200	11,820	F&S TRUCK (S.L.)	6	65,320	② 7, 8, 9, 10, 11, 12
3	24KL TANK LORRY	11,700 x 2,400 x 2,800	32,000	3	1.900	36,200	11,820	F&S TRUCK (S.L.)	6	65,320	③ 13, 14, 15, 16, 17, 18
4	PREMIER P&S: CAB	5,400 x 1,900 x 1,400	2,300	3	0.500	11.820	11,820	F&S P&S: CAB (S.L.)	6	65,320	④ 19, 20, 21, 22, 23, 24
5	PREMIER P&S: CAB	5,400 x 1,900 x 1,400	2,300	3	0.500	11.820	11,820	F&S P&S: CAB (S.L.)	6	65,320	⑤ 25, 26, 27, 28, 29, 30
6	PREMIER P&S: CAB	5,400 x 1,900 x 1,400	2,300	3	0.500	11.820	11,820	F&S P&S: CAB (S.L.)	6	65,320	⑥ 31, 32, 33, 34, 35, 36

※ 12.0 - 15.0M TRUCK 3대, 24.0M TRUCK 1대, 6M³ MIXER TRUCK 18대, 6M³ MIXER TRUCK 18대
 ※ 12.0 - 15.0M TRUCK 3대, 24.0M TRUCK 1대, 6M³ MIXER TRUCK 18대, 6M³ MIXER TRUCK 18대

TRACTOR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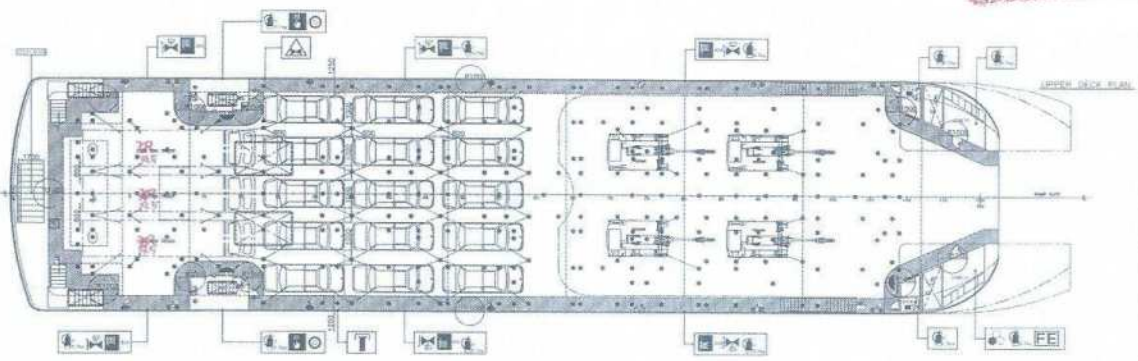
* PREMIUM PASC. CAR의 정량: 4100KG(1.15 TON) * 차량중량: 1000KG(2.20 TON) * 차량길이: 10.00M

NO.	차종	DIMENSION (M)	수량	중량 (TON)	길이 (M)	차량중량 (TON)	차량길이 (M)	DPY LAYOUT (M) & 수량	비고
1	TRACTOR	4.600 x 2.050 x 2.050	4,500	1,540	1.540	10,500	10.000	FOR TRACK (S.L.) 5 TON 1450' 415' @ 1215	
2	TRACTOR	4.600 x 2.050 x 2.050	4,500	1,540	1.540	10,500	10.000	FOR TRACK (S.L.) 5 TON 1450' 415' @ 1215	
3	TRACTOR	4.600 x 2.050 x 2.050	4,500	1,540	1.540	10,500	10.000	FOR TRACK (S.L.) 5 TON 1450' 415' @ 1215	
4	PREMIUM PASC.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100	1.100	11,370	10.000	FOR PASC. CAR (S.L.) 2 TON 1450' 415' @ 1215	
5	PREMIUM PASC.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100	1.100	11,370	10.000	FOR PASC. CAR (S.L.) 2 TON 1450' 415' @ 1215	
6	PREMIUM PASC.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100	1.100	11,370	10.000	FOR PASC. CAR (S.L.) 2 TON 1450' 415' @ 1215	
7	PREMIUM PASC.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100	1.100	11,370	10.000	FOR PASC. CAR (S.L.) 2 TON 1450' 415' @ 1215	
8	PREMIUM PASC.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100	1.100	11,370	10.000	FOR PASC. CAR (S.L.) 2 TON 1450' 415' @ 1215	
9	PREMIUM PASC.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100	1.100	11,370	10.000	FOR PASC. CAR (S.L.) 2 TON 1450' 415' @ 1215	

B. 10' TRACK 100 B. 50' TRACK 100 B. 10' TRACK 100 B. 10' TRACK 100
 PREMIUM PASC. CAR 100 PREMIUM PASC. CAR 100 PREMIUM PASC. CAR 100 PREMIUM PASC. CAR 100



POCLAIN & 15 TON TRUCK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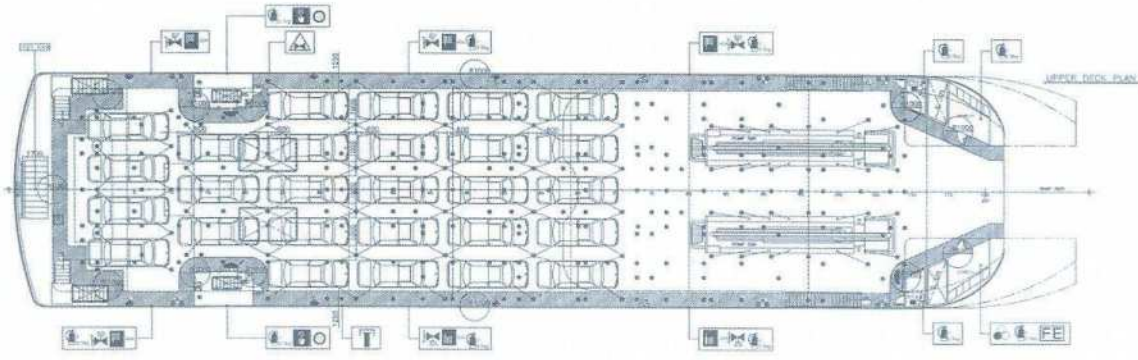


* PREMIUM PASC. CAR의 정량: 4100KG(1.15 TON) * 차량중량: 1000KG(2.20 TON) * 차량길이: 10.00M

NO.	차종	DIMENSION (M)	수량	중량 (TON)	길이 (M)	차량중량 (TON)	차량길이 (M)	DPY LAYOUT (M) & 수량	비고
1	POCLAIN	7.400 x 2.400 x 2.040	14,500	1,700	1.700	24,725	10.000	FOR TRACK (S.L.) 5 TON 1450' 415' @ 1215	
2	POCLAIN	7.400 x 2.400 x 2.040	14,500	1,700	1.700	24,725	10.000	FOR TRACK (S.L.) 5 TON 1450' 415' @ 1215	
3	PREMIUM PASC.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100	1.100	11,370	10.000	FOR PASC. CAR (S.L.) 2 TON 1450' 415' @ 1215	
4	PREMIUM PASC.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100	1.100	11,370	10.000	FOR PASC. CAR (S.L.) 2 TON 1450' 415' @ 1215	
5	PREMIUM PASC.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100	1.100	11,370	10.000	FOR PASC. CAR (S.L.) 2 TON 1450' 415' @ 1215	
6	15 TON TRUCK	11.075 x 2.400 x 2.140	30,000	1,800	1.800	54,000	10.000	FOR TRACK (S.L.) 5 TON 1450' 415' @ 1215	

B. 10' TRACK 100 B. 50' TRACK 100 B. 10' TRACK 100 B. 10' TRACK 100
 PREMIUM PASC. CAR 100 PREMIUM PASC. CAR 100 PREMIUM PASC. CAR 100 PREMIUM PASC. CAR 100

PUMP CAR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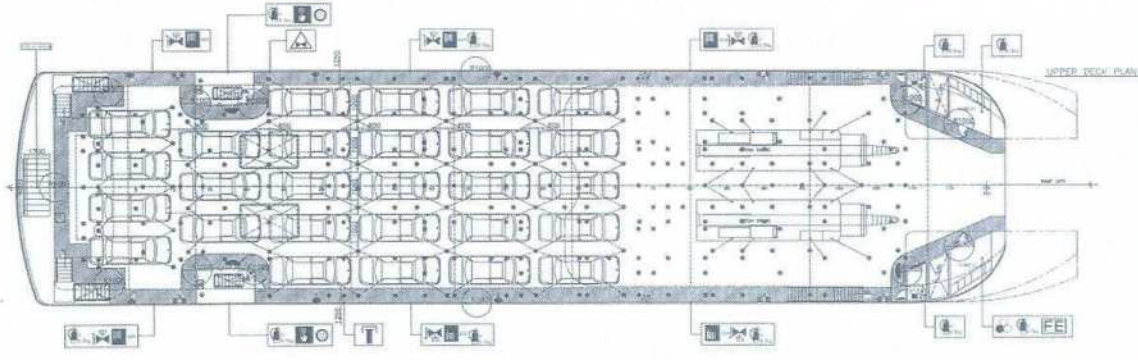
* PREMIUM PASS CAR의 승객 수(승객 1인 1석) - 승객승차 1인(2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NO.	차종	승객용 면적	승객용 길이	승객용 폭	승객용 높이	승객용 무게	승객용 용량	승객용 위치	비고
1	PUMP CAR	23,871 x 2,400 x 3,200	23,871	2,400	3,200	18,000	18,000	FOR TRUCK 18.1, 2,100, 1912.478, 2,200	
2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900	1,400	11,000	11,000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3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900	1,400	11,000	11,000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4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900	1,400	11,000	11,000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5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900	1,400	11,000	11,000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6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900	1,400	11,000	11,000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7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900	1,400	11,000	11,000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 승객용 면적 : 23,871 x 2,400 x 3,200 * 승객용 길이 : 23,871 * 승객용 폭 : 2,400 * 승객용 높이 : 3,200
 * 승객용 무게 : 18,000 * 승객용 용량 : 18,000 * 승객용 위치 : FOR TRUCK 18.1, 2,100, 1912.478, 2,200
 * 승객용 면적 : 5,400 x 1,900 x 1,400 * 승객용 길이 : 2,300 * 승객용 폭 : 1,900 * 승객용 높이 : 1,400
 * 승객용 무게 : 11,000 * 승객용 용량 : 11,000 * 승객용 위치 :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50TON CAR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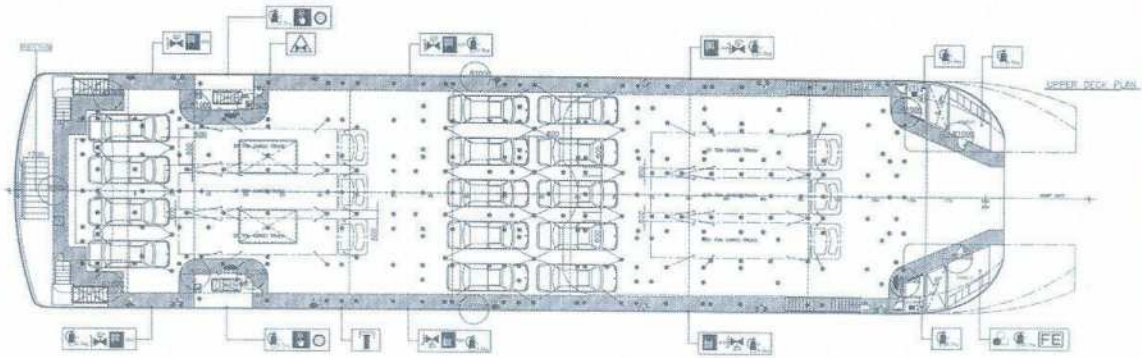


* PREMIUM PASS CAR의 승객 수(승객 1인 1석) - 승객승차 1인(2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NO.	차종	승객용 면적	승객용 길이	승객용 폭	승객용 높이	승객용 무게	승객용 용량	승객용 위치	비고
1	50TON CAR	15,800 x 2,500 x 3,700	15,800	2,500	3,700	27,000	27,000	FOR TRUCK 18.1, 2,100, 1912.478, 2,200	
2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900	1,400	11,000	11,000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3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900	1,400	11,000	11,000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4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900	1,400	11,000	11,000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5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900	1,400	11,000	11,000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6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900	1,400	11,000	11,000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7	PREMIUM PASS CAR	5,400 x 1,900 x 1,400	2,300	1,900	1,400	11,000	11,000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 승객용 면적 : 15,800 x 2,500 x 3,700 * 승객용 길이 : 15,800 * 승객용 폭 : 2,500 * 승객용 높이 : 3,700
 * 승객용 무게 : 27,000 * 승객용 용량 : 27,000 * 승객용 위치 : FOR TRUCK 18.1, 2,100, 1912.478, 2,200
 * 승객용 면적 : 5,400 x 1,900 x 1,400 * 승객용 길이 : 2,300 * 승객용 폭 : 1,900 * 승객용 높이 : 1,400
 * 승객용 무게 : 11,000 * 승객용 용량 : 11,000 * 승객용 위치 : FOR PASS CAR 18.1, 2,100, 1912.478, 2,200

25TON CARGO TRUCK & PREMIUM PASS. CAR ARRAN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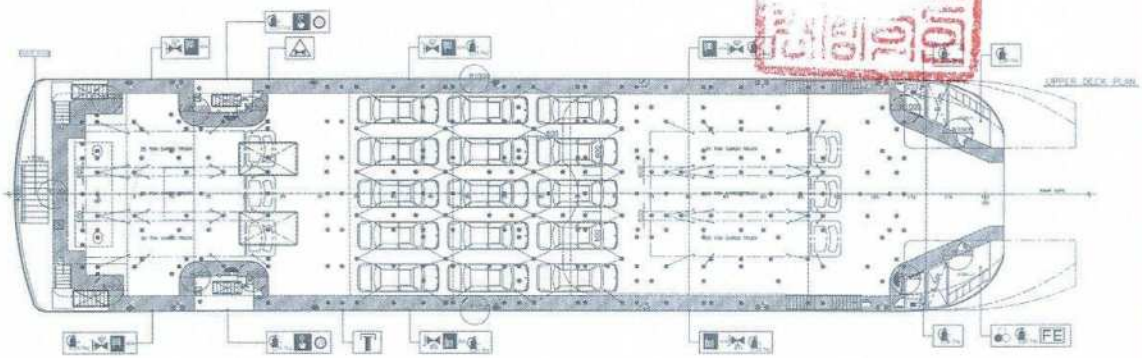


* PREMIUM PASS. CAR의 승차 인원 시정용량(1.50톤) + 1차승차용량(1.50톤)을 적용하여 계산함.

NO.	차종	차종별 크기	승차용량	1차 승차용량	1차 승차용량(1.50톤)	승차용량(1.50톤)	차량 수(1.50톤 기준)	차량 수(1.50톤 기준)	차량 수(1.50톤 기준)	차량 수(1.50톤 기준)
1.	25TON CARGO TRUCK	12.775 x 2.400 x 3.240	30.975	0	1.500	116.025	1	1	1	1
2.	PREMIUM PASS. CAR	3.400 x 1.900 x 1.400	2.300	5	0.300	11.600	10	10	10	10
3.	PREMIUM PASS. CAR	3.400 x 1.900 x 1.400	2.300	5	0.300	11.600	10	10	10	10
4.	25TON CARGO TRUCK	12.775 x 2.400 x 3.240	30.975	0	1.500	116.025	1	1	1	1
5.	PREMIUM PASS. CAR	3.400 x 1.900 x 1.400	2.300	5	0.300	11.600	10	10	10	10

* 1차 승차용량(1.50톤 기준) : 25TON CARGO TRUCK 1대
 * 승차용량(1.50톤 기준) : 25TON CARGO TRUCK 1대
 * 1차 승차용량(1.50톤 기준) : 25TON CARGO TRUCK 1대
 * 승차용량(1.50톤 기준) : 25TON CARGO TRUCK 1대

25TON CARGO TRUCK & PREMIUM PASS. CAR ARRANGEMENT



* PREMIUM PASS. CAR의 승차 인원 시정용량(1.50톤) + 1차승차용량(1.50톤)을 적용하여 계산함.

NO.	차종	차종별 크기	승차용량	1차 승차용량	1차 승차용량(1.50톤)	승차용량(1.50톤)	차량 수(1.50톤 기준)	차량 수(1.50톤 기준)	차량 수(1.50톤 기준)	차량 수(1.50톤 기준)
1.	25TON CARGO TRUCK	12.775 x 2.400 x 3.240	30.975	0	1.500	116.025	1	1	1	1
2.	PREMIUM PASS. CAR	3.400 x 1.900 x 1.400	2.300	5	0.300	11.600	10	10	10	10
3.	PREMIUM PASS. CAR	3.400 x 1.900 x 1.400	2.300	5	0.300	11.600	10	10	10	10
4.	PREMIUM PASS. CAR	3.400 x 1.900 x 1.400	2.300	5	0.300	11.600	10	10	10	10
5.	25TON CARGO TRUCK	12.775 x 2.400 x 3.240	30.975	0	1.500	116.025	1	1	1	1

* 1차 승차용량(1.50톤 기준) : 25TON CARGO TRUCK 1대
 * 승차용량(1.50톤 기준) : 25TON CARGO TRUCK 1대
 * 1차 승차용량(1.50톤 기준) : 25TON CARGO TRUCK 1대
 * 승차용량(1.50톤 기준) : 25TON CARGO TRUCK 1대

[붙임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별표 1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관련

분류	위험물	수량 및 질량
화약류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200개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400개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1kg
	도화선	3kg
고압가스	소화기, 약품류	2개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	10kg
부식성 물질	축전지	2개
	소화액(부식성인 것) 약품류	3kg
독물류	시약으로 사용되는 독물로 용기등급이 2 또는 3인 것	3kg
인화성 액체류	살충살균제류(액체로서 인화성 이고 독성인 것), 약품류	3kg
	도료, 가솔린, 등유	20kg
	흡연용 가스라이터(연료유가 주입된 것)	10kg
산화성 물질류	고순도표백분, 보통표백분	3kg
가연성 물질류	셀룰로이드	1kg
	안전성냥, 약품류	3kg
	카파, 나프탈렌, 유성가공종이, 섬유	5kg
	필름(니트로셀룰로오스베이스로서 젤라틴으로 피복된 것)	20kg
유해성 물질	드라이아이스	5kg
<p>※ 비고</p> <p>1. 수량 또는 질량은 1인당 휴대기준을 말하고, 질량은 용기 및 포장의 질량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p> <p>2. 위험물선박운송기준 [별표1] “위험물 목록”의 적재격리요건 란에 적재방법 ‘D’ 및 ‘E’로 분류되는 위험물(휘발유 등), 화약물의 경우 적재방법 “03”, “04”, 및 “05”로 분류되는 위험물(기준 제26조에서 정하는 화약류는 제외)은 여객선 적재가 금지됨 위험물이므로 여객선에 적재할 수 없음.</p>		

[붙임7] 선원법정교육 목록

1. 해상직원 법정교육 LIST

교육명	구분 및 교육기간	유효기간	관련법령
기초안전교육	4.5일 / (재)2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안전교육	구명정(재) / 3(0.5)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소화(재) / 3(1)일	5년	
	응급처치(재) / 3(0.5)일	5년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5년	
해양오염방지 교육	정규 / 3일	5년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재·보충 / 2일	5년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시뮬레이션 / 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레이더 / 2일	없음	
리더쉽 및 팀워크 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리더쉽및관리 기술직무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여객선교육	기초(재) / 2(1)일	5년	선박직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2
	상급(재) / 4(2)일	5년	
의료관리자교육	자격취득교육 / 5일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보수교육 / 2일	5년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기사반 / 5일	없음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전파전자 3급 통신사 / 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전파전자 4급 통신사 / 3일	없음	
연안선 직무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여객선 직무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붙임 8]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및 화물 검용 여객선)							1/2	
년 월 일 시 분							출항	
선 명				선박번호				
항로 및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		시간 분		
출 수	선수 : m, 중앙 : m, 선미 : m							
최대 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	명	여객	명	선원	명	임시 승선자	명	
실제 승선인원	(①+②+③+A+B)명		여객	(①+②+③)명 대인 ①명 소인 ②명 유아 ③명	선원	④명	임시 승선자 ⑤명	
화물의 적재한도 (운항관리규정)							M/T	
실제화물 적재중량 (화물집계표)	(a+b+c)M/T			차량화물 대		a M/T		
				일반화물		b M/T		
				컨테이너 개		c M/T		
위험화물 (차량 및 수하물)	위 치	종 류		수 량	보관형태	특징/비고		
	지정장소 (선수창고 등)							
	화물창							

※ 일반카페리선박에 한해 G.M 등 복원성계산서를 첨부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2/2

선 명	선박번호	점검결과		비 고
구 분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항해준비	항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상기상 및 항행정보를 파악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승무정원증서상 법정승무원이 승선하여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감 항 성	선체상태, 복원성(G ₀ M 등), 만재흡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평형수 적재 가능한 일반카페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선체 상태, 만재흡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차도선 및 쾌속카페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기 및 발전기의 연료유공급탱크 충진을 확인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 류	여객명부, 화물목록 등 본선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 운 전	선교 항해장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레이더, 컴퍼스, 음향측심기, 전자해도시스템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조타기 및 각종 지시기, 경보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통신설비 및 선내방송시설이 정상 작동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계선·양묘설비 등 갑판설비는 정상 작동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적, 항해등 등 항해보조기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기 및 발전기, 기타 기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급/수리	필요한 연료유 및 기기 예비품이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객실 등 여객구역에 비품이 비치되고, 여객구역이 청결/안전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박/적재	기관실 내 이동물이 고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물구역의 화물이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되었는가? 선내 위험화물이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화/구명	선내 소화설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선내 구명설비 및 비상탈출로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보안 등	선원이 알코올 또는 마약을 음용하지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육상작업원, 방선자의 하선 및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관실내 화기/발화물질이 제거되었는가? 기관실 및 타기실 내 누수, 누유 여부 및 빌지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결합사항 :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선 장				(인)
선장 등과 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합니다.				운항관리자 (인)

주: 점검 후 결과란 "예", "아니오" 에 √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표시한다.

[붙임9] 선박계획정비표(9-1)

○ (갑판부) 일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양호: 0 ,불량:×

	점검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주기관 및 추진기 작동상태 점검																	
2	통신기기 작동상태 점검																	
3	레이더등 항해장비 작동상태 점검																	
4	선내통신장비 콤파스 작동상태 점검																	
5	전화기 작동상태 점검																	
6	방송 및 비디오(영상장치)작동상태 점검																	
7	항해등&탐조등 작동상태 점검 기적, 호종 작동 및 비치 상태 점검																	
8	항해일지 기록상태 점검																	
	점검자 확인																	
	선 장 확인																	



선박계획정비표 (9-2)

○ (기관부) 일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양호: 0 , 불량: X

	점 검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기관실 빌지 발생확인																
2	일반용 배터리 전압 확인																
3	주기 및 발전기 윤활유 레벨 확인																
4	주기 및 발전기 냉각수량 확인																
5	감속기 윤활유 레벨 확인																
6	조타실 유압유 레벨 확인																
7	기관실 강제통풍장치 흡입팬 작동 확인																
8	해수펌프 및 청수펌프 작동상태 확인																
9	기관일지 기록상태 점검																
	기관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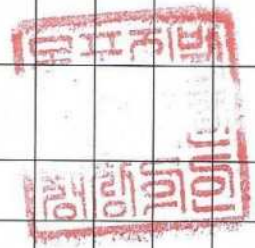
선박계획정비표 (9-3)

○ (갑판부) 월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양호: 0 불량: X

장비명	점검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화장실	1	해수 흡입구 상태 확인											
	2	푸시버튼 상태 확인											
	3	출입문 핸들 및 잠금상태 확인											
객실출입문	1	출입문 핸들상태 확인											
	2	출입문 잠금 상태 확인											
윈드라스	1	작동 윤활유 레벨 상태 확인											
	2	작동 윤활유 필터 상태 확인											
	3	작동 스위치 작동 상태확인											
	4	브레이크 및 밴드 마모상태 확인											
	5	앵커 § 체인 § 줄 마모상태 확인											
	6	앵커고정 턴버클 상태 확인											
비상등	1	비상등 식별표시 여부 확인											
	2	램프 § 커버 파손 확인											
	3	램프 밝기 확인											
	4	작동상태 확인											
폐기물 기록부	1	작성 상태											
	2	반출 확인서 부착 확인											
점검자 확 인													
선 장 확 인													



선박계획정비표 (9-4)

○ (기관부) 월별 점검표

점검년: 년

양호: 0 불량: X

장비명	점 검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기관	1	윤활유 § 연료유 1.2차 필터 교환											
	2	고정볼트 이완여부 확인											
	3	공기청정기청소											
	4	씨체스트 징크량 점검											
발전기	1	윤활유 § 연료유 1.2차 필터 교환											
	2	고정볼트 이완여부 확인											
	3	에어필터 소제											
	4	온도계, 압력계 점검											
펌프	1	해수펌프 메카니컬실 누수 확인 (글랜드 팩킹 누수 상태)											
	2	청수펌프 메카니컬실 누수 확인											
	3	소화펌프 메카니컬실 누수 상태											
	4	압력계 점검											
클러치	1	스트레이너 소제											
	2	고정볼트 이완여부 확인											
비상 축전지	1	케이블 연결 및 외관 상태											
	2	축전지 보호 상태											
기름 기록부	1	작성 상태											
	2	폐유 반출 확인서 부착 확인											
유수 분리기	1	작동 테스트											
	2	기름감지전극봉 점검											
점 검 자 확 인													
기 관 장 확 인													

선박계획정비표 (9-5)

○ (갑판부) 분기별 점검표

점검년 : 년

양호: 0 불량: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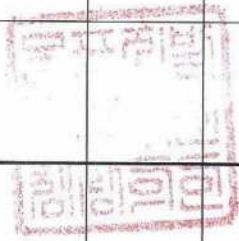
장비명	점검항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구명조끼	1	청결 건조상태 확인				
	2	호각 상태 확인				
	3	비치수량 확인				
	4	손상여부 확인				
구명부환	1	줄(Line) 상태 확인				
	2	비치수량 확인				
	3	이탈장치 확인				
	4	손상여부 확인				
신호탄	1	로켓신호및발연부신호 보관상태확인				
자기 점화등	1	보관상태 확인				
	2	배터리 상태 확인				
	3	램프 상태 확인				
소방원 장구 Set	1	보관상태 확인				
	2	자장식 호흡구 상태 확인				
	3	공기 충전압력 확인				
	4	방화복 비치 수량 확인				
	5	방화장화 및 장갑 비치수량 확인				
	6	구명줄 비치 확인				
	7	방폭등 비치 수량 확인				
	8	작동상태 확인				
소화전	1	밸브 개폐상태 확인				
	2	호스 및 만능노즐 상태 확인				
	3	호스 연결부 접속 확인				
자기 나침의	1	자차 확인				
	2	기포 발생 여부 확인				
	3	컴파스 리더 확인				
계선색 및 웬다	1	손상여부 확인				
	2	마모여부 확인				
	3	보관상태 확인				
점검자 확 인						
선 장 확 인						

선박계획정비표 (9-6)

○ (기관부) 분기별 점검표

점검년 : 년

양호: 0 불량: X

장비명		점검항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기관	1	윤활유 필터 청소				
	2	안전장치 점검				
	3	주기관 기측운전, 제어 시운전 확인				
발전기	1	안전장치 점검				
기관실 통풍기	1	작동 상태 확인				
잡용수 펌프	1	그랜드 실(패킹) 및 오일 교환				
각분전반 및 펌프	1	절연 상태 확인				
배터리충전기	1	기능시험				
램프(등)	1	객실조명 램프 상태 및 불량품교환				
점검자 확인						
기관장 확인						

여객선 정기 점검표 (9-7)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관련)

※ 점검사항의 결과란은 양호는 ○, 보통은 △, 불량은 ×로 표시합니다.

선명(선박번호)	()	기관마력	hp		
항로 및 항해구역	진수연월일				
점검사항					
구분	내용	결과	구분	내용	결과
선체	선체 및 도장 상태		구명설비	구명기구·신호장치 상태	
	흘수 상태			진수장치 상태	
기관	기관정비 상태		화물	위험물 적재장소의 관리 상태	
통신	통신기 작동 상태		일지기록	비상훈련의 이행여부	
항해용구	항해계기 정비 상태			비상시의 임무숙지 상태	
	조타설비 상태			항해일지의 기록여부	
	닢·쇠사슬 및 로프 상태		보안시설	비상용 경보장치 상태	
	속구(屬具) 및 비품 비치 상태			보안·청원경찰의 승선 유무	
소방설비	소화 및 비상펌프 정비 상태		위생설비 기타	여객선의 청결 상태	
	소화전·호스·소화기 상태			화장실의 위생 상태	
	소방수통 상태			방승·난방·통풍 시설	
육상시설	육상 승선·하선 시설		기타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중선의 운영 상태			선원의 처우 상태	
위 지적사항의 시정여부					
지적사항	시정여부	지적사항	시정여부		
이번의 지적사항			시정기한		
점검일시 :	년	월	일		
점검 및 입회자				선장	①, 사업자

[붙임 10] 비상부서 배치표

선명 : 섬드리비금농협고속페리

비상부서 배치표

구분	상황		소화·폭발	퇴선	해양오염	인명구조	비상조타	충돌·좌초	기관고장
	위치	직책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선교	선장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여객안내방송 조난통신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중요서류반출 여객안내방송 조난통신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조난통신	총지휘, 보고 및 대외업무
기관실	기관장	현장지휘 소화펌프작동 전원 및 통풍기차단 소화기휴대 및 소화작업	현장지휘 기관운전 여객유도 구명부환 해상투하 기관일지휴대	현장지휘 및 방제작업 갑판,기관실 개구폐쇄	현장지휘 익수자 위치확인 및 구조작업 응급처치 및 의료지원	작업반장, 선교와통신	현장지휘/ 수리,침수 방제작업/ 손상현황 파악	작업 반장	
현장	갑판부원	소화, 구조작업 방화복	구명조끼분배 및 착용안내 비상탈출구안내	방제지제운반 및 방제작업	구조작업 구명부환 투하	투묘준비	매트,모포 지주운반 및 투묘준비	투묘준비	
	기관부원	소화호스 살수자	현장보좌 여객유도		부상자치료 환자이송	타기실 비상조타	수리침수 방제작업	수리작업 지원	
비상신호	비상배치신호 : ●●●●●●●● (단음 7회후 장음 1회) 화재신호 : ■■■■■■ (장음 5회 반복) 퇴선신호 : ■■■■■■ (연속음 약30초이상)								
비고	전 승무원 소화현장 집결시 소화기 휴대		전 승무원 구명조끼, 안전모 착용		발견즉시 구명부환 투하, 선내 경보				

[붙임 11]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선내 비상훈련의 주기

훈 련 명	시 행 주 기
소화 훈련	매 10일
퇴선 훈련	매 10일
인명구조 훈련	매 6개월
비상조타 훈련	매 3개월

비상상황 유형

구분	비상상황 유형	보 고 기 준
1.	소화	선내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서, 확산되어 선박인원으로 제어 불가능한 경우, 선박의 안전 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퇴선	화재 및 충돌·좌초로 인하여 선박을 탈출하여야 할 경우
3.	비상조타	선박 조타기의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본선의 위험여부, 본선자체수리여부, 타선 박 운항 상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 판단하여 대처한다.
4.	인명구조	선원 및 여객이 해상에 빠진 경우 자선이 수색 및 구조를 하는 경우 및 타선박의 지원사항 포함
※ 통신유지 사항		VH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선원 4명)

1) 소화훈련요령

- 화재사실을 발견 시 “00장소에서 xx급 화재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 (또는 비상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며, 소화기를 즉시 사용하는 등 화재 초기진화 조치를 한다.
- 선장은 여객 동요방지를 위해 화재상황을 간략하게 방송 후 화재현장이 풍하쪽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화재현장으로 이동한다.
- 갑판부원(기관부원)은 소화작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여객에게 도움을 청한다.
(필요시 자장식 호흡구는 기관장이 착용한다)
- 현장에 투입한 갑판부원(기관부원)은 소화기로 초기진화가 어려울시 선장에게 즉시 보고 한다.
[화재현장의 전원차단, 통풍기차단 및 적절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그리고 인접 격벽에 살수(화재확산 방지)]
- 선장은 초동조치로(소화기)등으로 화재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상황식별 : 화재종류, 화재장소 재확인, 현재선위, 기상조건 등 파악(풍향, 풍속, 파고, 조류 등), 주위에 가까운 곳에 있는 선박을 확인한다.
- 또한, 선장은 VHF,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화재발생 현황 및 본선조치사항, 구조필요성 여부를 요청하여야 한다.(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
- 기관장은 소화범위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소화작업에 임한다.
- 화재현장 전원차단, 통풍기차단, 소화기를 이용 화재진압 인접 격벽에 살수 (화재 확산 방지)
- 선장으로부터 화재상황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장의 지원 요청에 대한 관련기관에 보고 및 소방선 수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화재진화가 완료되면 여객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한 후 갑판부원(기관부원)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선장에게 보고 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2) 퇴선훈련요령

- 선장은 본선의 상황에서 퇴선 결정을 하면 비상신호(단음7회 후 장음1회) 및 여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현 위치에서 침착하게 대기하면서 다음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선장은 퇴선이 결정되면 VHF,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회사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 본선의 승선인원 및 위치, 퇴선이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조난신호를 작동하여야 한다.
- 선장으로부터 퇴선의 보고를 받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관할관청(지방청, 관할 해양경찰서(119)에 보고하고 구조선의 파견여부 등 구조수단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관장은 선박이 침몰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연료탱크 주입구, 배출구를 폐쇄토록 조치 해상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퇴선신호 및 방송을 청취한 기관장 및 기관부원은 휴대품을 들고 여객이 질서 있게 퇴선 할 수 있도록 퇴선장소로 안내하여 퇴선위치에 정렬하게 한다 (구명조끼, 구명부환이 위치한곳)
- 퇴선준비가 완료되면 선장은 퇴선명령을 내린다.(퇴선신호 연속음 약30초이상)
- 기상상태가 좋을 경우 구명부기를 서로 묶어 통제하여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여객이 많아 통제가 힘들 경우)
- 선장은 회사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퇴선사실을 통보하고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실행 가능한 구조수단을 결정하고 본선 선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선장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통보받은 구조방법을 본선 여객 및 기관장 (갑판부원) 에게 통지하여 여객이 안정 및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선장은 “퇴선 해제”라는 말과 함께 훈련상황을 종료하며,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3) 비상조타훈련

- 선장은 조타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감속하고 비상신호(장음3회 반복)와 여객에게 간략하게 방송하고 기관장은 비상조타 위치로 이동하며, 관계기관(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에 보고한다.
- 선장은 본선주위의 타선박의 통행량 확인 후 조타기 불능의 신호기류(주간에는 흑구2개, 야간에는 홍등 2개, 음향신호 단음 5회 이상)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기관장(기관부원)가 현장에 도착한 즉시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비상조타로 전환한다.
- 선장은 조타기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면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VHF, 무선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조타기고장 발생·원인, 자체 수리가능여부, 조타기수리 소요시간 등을 보고 한다.
- 선장은 본선에서 조타기 자체수리가 불가할 경우 비상조타로 가까운 기항지까지 입항가능여부와 필요한 경우 예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선장은 비상조타만으로 이·접안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한 수심이 낮은 쪽으로 항해하면서 즉시 투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다.
- 선장으로부터 육상지원을 요청받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적절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장은 수리완료 되면 비상조타를 종료하고, 여객에게 안내방송 후 회사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조타기수리완료 보고(고장원인 포함)를 실시 후 “비상조타부서 배치해제”란 방송과 함께 훈련상황을 종료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4) 인명구조훈련요령

-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자는 큰소리로 「OO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를 외친다.
-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이 프로펠러에 말려들지 않도록 빠진 현으로 전타함과 아울러 기관을 정지시킨다.
-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부근에 있는 구명부환을 던져 주며, 가능하다면 야간에는 자기점화등, 주간에는 자기 발연 신호를 매달아 함께 던진다. 기타 현장 부근에 있는 나무 등의 부유물을 던질 수도 있다.
- 선장은 선내경보를 울리고, 필요하다면 여객에게 도움을 청한다.
- 구조반(갑판부원/기관부원)는 가능한 한 높은 장소에서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 (조선) 방법을 빨리 결정하고 또한 실행하여야 한다.
- 선박 통행이 많은 장소에는 국제신호 "0"기를 올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음을 알린다.
- 필요하다면 긴급통신을 송신하여 타 선박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수색 및 구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선체와 떨어져서 구명부환을 잡고 그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구명조끼의 호각, 기타 유효한 신호 방법으로 위치 표시를 계속한다.
- 구조반은 익수자와 본선간의 상대방위와 거리를 선교의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당시의 기상상황 및 익수자의 식별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적절한 조선으로 익수자를 본선의 풍하 측에 위치하도록 조선한다.
- 구조반은 필요시 탐조등을 준비하고 익수자를 비춘다.
- 선장은 적절한 구조방법을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지시한다.
- 익수자 위치·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할시, 실종시간을 추정하여 항로를 회항하면서 익수자를 탐색한다.
- 선장은 익수자 발생 시 관계기관(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에 즉시 VHF, 무선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보고한다.
- 익수자 구조 후 의식불명으로 긴급 환자 이송 등 육상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익수자의 상태 및 본선 조치내용 등을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선장은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하고 건강한 경우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배치 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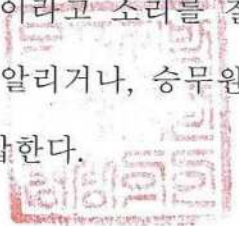
[붙임 12]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객선에서 훈련 및 비상 시 사용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 비상신호 : ●●●●●●●● — (단음 7회후 장음 1회)
 - 화재신호 : — — — — — (장음 5회 반복)
 - 퇴선신호 : ————— (연속음 약30초이상)

- 화재 발생 시
 - 화재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장소에 화재 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주위에 비상벨이 있는 경우 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승무원에게 알린다.
 -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
 - 선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퇴선상황 발생 시
 - 선내방송과 비상신호를 청취한다.
 - 주위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탈출한다.



[붙임13]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구분	연번	장비·시설	수량	설치장소
항해	1	레이더	1	선교
	2	모터 싸이렌	1	선교
	3	GPS 플로터	1	선교
	4	선수방위 전달 장치	1	선교
	5	마그네틱 컴퍼스	1	선교
	6	AIS	1	선교
	7	원격제어 장치	1	선교
	8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S-VDR)	1	선교
기관	1	주기관 : 디젤1350KW	2	기관실
	2	발전기 : 175KW	2	기관실
	3	비상축전기	2	기관실
통신	1	VHF	1	선교
	2	2-WAY VHF	2	선교
구명	1	구명부기(12인용)	20	선교갑판
	2	구명조끼 (대인490+소인48+유아12)	550	붙임3참조
	3	구명부환	4	선교갑판
소화	1	포말 소화기 (45 ℓ)	1	기관실
	2	분말 소화기 (6.5kg)	24	붙임3참조
	3	이산화탄소 소화기 (6.8kg)	3	선교, 기관실
	4	소화전	11	붙임3참조
기타	구명 및 소화장비 현황은 [붙임3.4]의 관련 도면에 상세히 표기 되어 있음			

[붙임14] 선박 문서 보존연한

연번	문서(명)	보존기간	관리자
1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영구	선장
2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선장
3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유효기간	선장
4	위험물적합증	영구	선장
5	선박국적증서	영구	선장
6	무선국허가증	영구	선장
7	검사(무선국)증명서	유효기간	선장
8	해기사면허증	유효기간	선장
9	승무정원증서	영구	선장



[붙임15] 문서관리대장

□ 도면 및 서류

연번	문서명	보조기간	관리자
1	운항관리규정	영구	선장
2	여객선 이력관리장부	영구	선장
3	복원성 자료	영구	선장
4	항해일지	영구	선장
5	기관일지	영구	선장
6	기름기록일지	영구	선장
7	선박계획 정비기록부	영구	선장
8	출항전 점검기록부	1년	선장
9	건강진단서	1년	선장
10	폐기물기록부	영구	선장

[붙임 16] 내부심사 절차서

내부심사 절차서

1. 심사 구분

가. 정기내부심사 : 연1회 이상 선박/안전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실시

나. 특별내부심사 : 특정사유 발생시 최고경영자 승인을 얻어 특정선박 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

2. 내부심사 주요 내용

가. 회사 안전 목표/방침 이해 여부

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적합성 및 상호 모순성 여부

다. 문서 및 기록유지 관리상태, 부적합사항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

라. 교육훈련 실시 여부등

3. 내부심사자 자격요건

가. 당사 근무경력 5년이상인 자로서 직급이 과장 이상인 자

나. 선박안전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내부심사 계획 및 준비 절차

가.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1) 수석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연도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심사대상에게 심사 실시 10일전까지 통보한다.

2) 내부심사 계획서에는 심사목적, 심사종류, 심사대상 심사범위, 심사일정, 심사(심사원) 구성, 내부심사 점검표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 심사수행

1)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 시작 전 심사자, 피심사자를 참석시켜

○ 심사의 목적 및 범위, 심사방법, 심사자 소개 심사절차 및 일정

○ 이전심사의 미결사항, 피심사부서 심사 담당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심사수행

○ 심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 및 내부심사 주요내용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다.

○ 심사대상 또는 선박의 업무진행에는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심사한다.

-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피심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피심사부서 담당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
- 피심사부서장 또는 선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 및 조치기한을 심사팀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종료회의

심사팀장은 피심사부서 해당직원을 참석시켜 아래의 심사결과를 설명 협의한다.

-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부적합사항 또는 권고사항 확인 및 설명
-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절차 및 조치시한 확인 및 필요시 재조정
- 운항관리규정 개선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사항

5. 심사결과

가. 결과보고 절차

수석안전관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를 작성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 1) 해당부서에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 2) 수석안전관리자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보고서를 해제한다.

6. 최고경영자는 내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 17]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내부심사 부적합 사항 보고서		부적합번호 (부)	
		발행일자	
<input type="checkbox"/> 내부심사 <input type="checkbox"/> 고객불만사항 <input type="checkbox"/> 자체발행		대상부서	
※ 부적합사항 1. 관련문서(근거) 2. 부적합내용		<input type="checkbox"/> 중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경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권고사항	
해당부서장	심사자(발행자)	심시팀장	
※ 부적합사항 검토 및 시정조치 방안		조치기한	
시정조치부서	검토(심사)일	검토(심사)자	
※ 시정조치내용	시정조치일자	시정조치부서장	
※ 시정조치확인결과		<input type="checkbox"/> 종결승인 <input type="checkbox"/> 재조치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승인	
▶ 시정조치 재시행시 신규번호:(부) - - - 일련번호부여			
확인일자		확인(승인)자	재조치기한
※ 유효성/효과 검토 결과		종결일자:	최종확인자:



내부심사점검표			심사대상		
			심사종류		
			년도(□정기 □특별)		
심사목적		심사기간			
운항관리규정 항목		부적합	권고	심사자 명단 및 심사일정	
1.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				책임심사자	
2.안전관리 조직					
3.출항 또는 운항정지 조건					
4.운항기준도					
5.선장의 보고사항				일반심사자	
6.위험물 취급					
7.여객 승하선 및 화물 적재					
8.선박 및 수송시설의 점검정비					
9.해양사고등 사고발생시 조치					
10.여객준수사항의 전달				중부적합(○)	건
11.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				경부적합(△)	건
12.문서 및 자료관리				권고사항	건
13.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절차내용 미흡	건
14.내부심사				절차 불이행	건
15.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평가				업무이해 미흡	건
합 계				시정조치 미흡	건
				증거(기록)미흡	건
				지원 미흡	건
심사결과 요약 및 분석					
유첨	1.부적합사항 보고서 부				
작성일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주) 작성 → 책임심사자, 검토자 → 안전관리책임자, 확인자 → 최고경영자					

[붙임 18] 안전관리조직도

